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제도개선공개토론회

일시 : 2022. 11. 04. [금] 10:00~15:0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공동주최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책학회

진행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5	▶ 개회 및 국민의례	오세창 사무관
10:05~10:20	▶ 인사말씀 ▶ 축사	국민권익위원장 한국정책학회장
10:20~10:35	▶ 제1세션 주제발표 (국정과제 :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10:35~11:25	▶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중앙대 교수 심준섭 - 유관단체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기원 - 언론계 :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세정	박희봉 (현 한국공공관리학회장)
11:35~11:50	▶ 제2세션 주제발표 (전관특혜·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윤효석 제도개선전문위원
11:50~12:40	▶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경희대 교수 김광구 - 유관단체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승제 - 법조계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영민	문병기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12:40~13:30	점심식사	
13:30~13:45	▶ 제3세션 주제발표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	서재식 제도개선총괄과장
13:45~14:35	▶ 지정토론(4인) - 관계기관 : 주요부처 담당 부서장 - 학계 : 경북대 교수 정홍상 - 유관단체 : 준법감시협의회 회장 설광호 - NGO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유한범	강제상 (전 한국행정학회장)
14:35~14:50	▶ 현장 질의·응답(방청석)	
14:50~14:55	▶ 마무리 말씀	김태규 부위원장
14:55~15:00	▶ 폐회 및 마무리	오세창 사무관

인사말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션별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박희봉 現 한국공공관리
학회장님, 문병기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 강제상 前 한국행정
학회장님을 비롯하여 지정토론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토론회의 공동주최를 흔쾌히 허락하신 한국정책
학회 나태준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관이면서 최종적인 고충처리
기관으로서 '국민신문고', '110국민콜', '국민생각함' 등의 다양한
정책소통창구를 운영하며 지난해 총 2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수많은 고충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1,600여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968건의 제도개선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5.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 불거진 LH 임직원 땅투기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직사회에 만연한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과 전관특혜 관행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공정사회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하게 되는 3가지 주제인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전관특혜·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심사·행위제한 강화’,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기능 활성화’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고착된 관행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바꾸는 적극행정과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특례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서도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현 희

축 사

안녕 하십니까.

한국정책학회 회장 나태준입니다.

한국정책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기득권 유지와 전관특혜 관행은 논란의 대상이자 해결되어야 할 오래된 구조적, 관행적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퇴직한 공직자와 유관기관의 유착을 방지하고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2014년에 통과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전문자격제도에서 공직 경력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며, 공직에서 퇴직한 공직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의 만연한 관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산하 경제정의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 관련 8개 부처에서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588명 중 485명이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을 받아 82.5%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재취업 승인 비율은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자부(9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은 퇴직 후의 취업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직자 우대 풍토는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을 비롯한 비공무원 출신 취업지원자들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에 보다 엄격하게 공직경력 특혜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공직사회의 단골 이슈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여전히 많은 허점과 한계가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결과제를 바로 잡아 공직자들의 공직 경험을 특정 기관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익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일 토론회에서 나누게 될 논의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의 제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책학회장 나 태 준

목 차

I . 제1세션 주제	1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II . 제2세션 주제	43
【전관·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III . 제3세션 주제	77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	
IV . 토론 자료	141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국정과제】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2022. 1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05
II. 일반현황	06
III. 문제점 분석	10
1.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경력 인정’ 특혜, 논란 지속	10
2.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 ‘무시험 특혜’ 제도 운용	18
3. 공직퇴임 이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장치 미비	22
IV. 개선방안	29
1.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인정 특혜소지 차단	29
2.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무시험 특혜’ 제도 폐지	31
3. 공직퇴임 이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장치 도입	32
[붙임] 1.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제도 설문조사 결과	
2. 국가전문자격증의 종류 및 근거법률·시행기관 현황	

I. 추진배경

- 그동안 전·현직 공직자들간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관피아' 논란을 야기시키고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등 전관특혜 관행 여전**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91(실천과제)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 이러한 **공직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전관특혜 관행이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미비

- 공직자가 **재직 중에 '공직경력' 프리미엄을** 이용, **전문자격시험에서 과목면제 특혜**를 받음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보장을 저해**

※ '21. 9월 58회 세무사 2차시험, 세무공무원만 면제된 과목에서 과락률 82.13% 발생(세무공무원 합격자 비율 : 57회 6.6% → 58회 33.6% 증가)

※ 1차 전 과목 및 2차 일부과목 면제(관세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법무사)

- 특히, 일부 전문자격시험은 공직자가 **파면·해임이나 강등·정직 등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시험면제 특혜를 부여하는 등 논란을 초래**

※ 징계처분 받은 자 시험면제 특혜 부여 : 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등

- 이 외에 **공직퇴임 이후 수임제한 등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전문자격시장 질서를 교란**

※ '14년 기준, 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 공무원은 1만8,363명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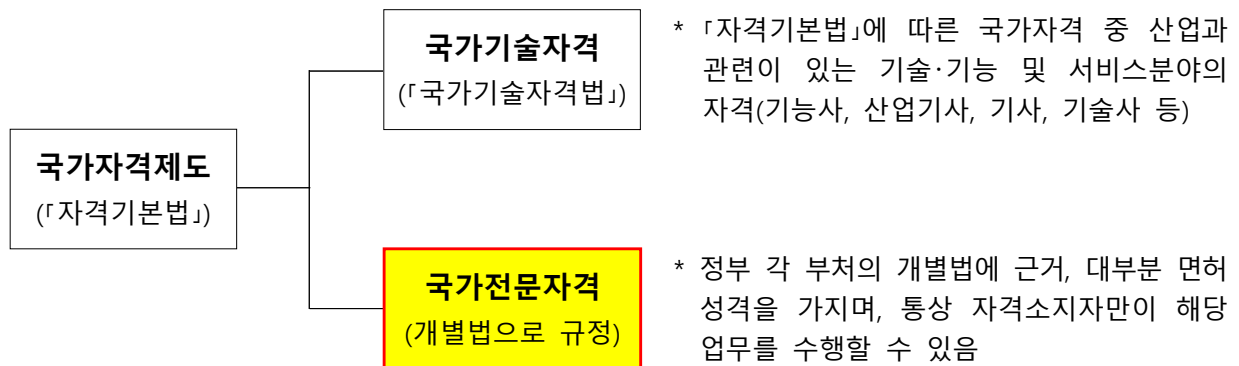
- 따라서 **공직사회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인 기득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전관특혜를 타파하고자** 관계기관, 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필요**

Ⅱ. 일반현황

가. 국가전문자격제도 현황

- 국가전문자격은 전문직종의 자격증으로서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증이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소관부처 등에서 운영·관리

※ 국가전문자격증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6개 부처에서 총 175개 종목** 운영(1·2급 등급 구분 또는 종목별 동일자격은 하나로 취급)



【소관부처별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

소관부처	종목 수	소관부처	종목 수	소관부처	종목 수
기획재정부	3	보건복지부	36	원자력안전위원회	5
교육부	8	환경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고용노동부	4	경찰청	4
법무부	2	여성가족부	2	소방청	3
국방부	13	국토교통부	25	문화재청	2
행정안전부	3	해양수산부	17	특허청	1
문화체육관광부	15	중소벤처기업부	2	산림청	6
농림축산식품부	12	공정거래위원회	1	해양경찰청	2
산업통상자원부	1	금융위원회	3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복 포함

【주요 국가전문자격의 종류 및 소관부처·시행기관 현황】

No.	자격명	근거법률	소관부처(법률)	시행기관
1	변호사	변호사법	법무부	법무부
2	법무사	법무사법	법무부	법원행정처
3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	관세사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	보세사	관세법	기획재정부	한국관세물류협회
6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8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9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10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1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안전협회
14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5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6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7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8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9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1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2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3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외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4	문화재수리기능사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문화재청
25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문화재청
26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27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8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9	경영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30	기술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나. 공직자 우대 및 혜택 배제 법적근거

-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 일정 경력을 가진 공직자에 한정하여 '전문자격 자동부여' 또는 '일부과목 면제' 혜택 등을 명시

【(예시) 일정 공직경력자 '자격 자동부여' 현황】

구 분	부 칙	내 용
행정사법	제9조(행정사자격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일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세무사법	법률 제4166호(1989.12.30.)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및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의 개정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1990년에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학과시험의 전 과목과 실무 시험의 세법에 관한 과목을 면제한다.
	법률 제6080호(1999.12.3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세무사의 자격) 및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시) 일정 공직경력자 '일부과목 면제' 현황】

구 분	1차시험 전 과목 면제대상	1차 전 과목 및 2차 일부과목 면제대상
관세사법	▶ 관세행정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 관세행정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 관세행정 2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세무사법	▶ 국세행정 10년 이상인 경력자 ▶ 지방세행정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지방세행정 20년 이상 경력자	▶ 국세행정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국세행정 20년 이상 경력자
행정사법	▶ 특수경력 및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7급 이상에 5년 이상 근무자	▶ 특수경력 및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중 6급 이상에 8년 이상 근무자 ▶ 특수경력 및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5급 이상에 5년 이상 근무자
법무사법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마약사무직렬 10년 이상 경력자	▶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마약사무직렬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자 (고위공무원 포함) ▶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마약사무직렬 7급 이상으로 7년 이상 경력자

○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 **공직 재직 중 징계처분 받은 자 등에 대한 과목면제 혜택 등을 배제**하는 근거규정 명시

【(예시) 공직 재직 중 ‘과목면제 혜택 제외’ 근거규정 현황】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관세사법	제6조의2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시험의 일부 면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및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 **공직퇴임 전문자격 소지자에 대한 ‘수임제한 등’**의 근거규정 명시

※ 수임제한 근거법률 : 변호사법(제31조), 관세사법(제13조의6), 세무사법(제14조의3), 행정사법(제21조의2)

Ⅲ. 문제점 분석

1. 시대에 뒤떨어진 '공직경력 인정' 특혜 논란 지속

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제도' 유지로 형평성 논란 여전

- 과거,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제도(자동자격 부여)'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되어 한차례 개편

※ 규제개혁위원회는 11종의 전문자격사(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시험 일부 면제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

【1999년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 ▶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자동자격 부여'는 2001년부터 폐지 결정(적용대상 : 200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 ▶ 2000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자동자격 부여

- 규개위는 '대국민 서비스 질의 확보를 위해 지나친 규제는 완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는 개선한다.'라는 명분으로 추진
- 이와 관련, 국세경력자 248명이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00.02.29.)**하였고,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

※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살리되, 자동자격 부여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관련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 사항】

- ▶ 국세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고 '00년 말까지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만 자동자격을 부여한 '99.12월 세무사법 개정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하였음('01.09.27.)
- ① **세무사법 제3조의 개정법률(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 ② 세무사법 부칙 제3항('00년 말까지 요건 충족자에 대해서만 자동자격 부여)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 다만 **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함**

- 이후에도 일반 응시생들이 지속적으로 '공직경력 인정제도' 자체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

【공직경력 인정제도 관련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소원 현황】

No.	사건번호	사건명	종국 결과
1	▶ 2000헌마84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 확인	기각, 각하
2	▶ 2000헌마364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 확인	
3	▶ 2007헌마956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 확인	
4	▶ 2007헌마1149	「세무사법」 제5조의2 위헌 확인	
5	▶ 2013헌마626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 확인	

【참고】「법무사법」 1990.01월 전부개정

제4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1. 7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查事務官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 이러한 현재 결정은 헌법재판소 직원(법무사, 자동자격 부여)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었다는 여론도 존재

※ 1948년 헌법위원회로 출범한 헌법재판소('88. 9월) 직원들은 오랜기간 동안 법원, 검찰청 직원들과 달리 사법서사(법무사) 자동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당시 「사법서사법」이 「법무사법」으로 전부개정('90. 1월)이 되면서 혜택을 받음

【참고】「사법서사법」 1954.04.03. 제정 ~ 1990.02.28.

제4조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

1. 15년 이상 법원서기보나 검찰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檢察의 搜查事務官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사법서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
2.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

- 1999년 규개위 의결로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2000년 역사속으로 사라졌으나 여전히 ‘공직경력 인정’ 특혜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는 진행 중인 상황

※ 세무사시험의 경우 「세무사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어 온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약 40년의 세월이 소요됨**

【(예시) 전문자격사(세무사) 취득 관련 공직경력 인정제도 변천 과정】

연월일	공직경력 인정제도
1961.09.09. (제정)	제3조(세무사의 자격) 1.~ 6. 생략 7.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근무한 자(자동자격 부여)
1972.12.08. (개정)	제3조(세무사의 자격) 1. 및 3.~4. 생략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 중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자동자격 부여)
1989.12.30. (개정)	제3조(세무사의 자격) 1. 및 3.~4. 생략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자동자격 부여)
1999.12.31. (개정)	제3조(세무사의 자격) 1. 및 3.~4. 생략 2. 삭제(자동자격 부여제도 폐지)

- 최근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시험의 불공정 출제·채점 의혹**으로 **공직경력 인정제도 폐지** 여론이 다시 촉발



【최근 5년간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무공무원 합격자수 현황】

구 분		54회 (‘17.08.19)	55회 (‘18.08.18)	56회 (‘19.08.17)	57회 (‘2008.08)	58회 (‘21.09.04)	계
응시자수		5,305명	5,331명	5,245명	5,378명	4,597명	25,856명
공 무 원	1차 면제	473명	458명	518명	509명	515명	2,473명
	2차 면제	590명	530명	484명	428명	482명	2,514명
합격자수		630명	643명	724명	711명	706명	3,414명
공 무 원	1차 면제	23명	18명	37명	30명	86명	194명
	2차 면제	15명	8명	35명	17명	151명	226명
면제 과목	세법학1부	26.5%	42.2%	50.5%	30.6%	82.1%	과락률 (%)
	세법학2부	62.1%	28.2%	26.9%	32.1%	44.4%	
<1차 면제대상> ① 국세 경력 10년 이상 ② 지방세 경력 10년 및 5급 이상 ③ 지방세 경력 20년 이상 <1차 면제 및 2차 일부과목(세법학1부·세법학2부) 면제대상> ① 국세 경력 10년 및 5급 이상 ② 국세 경력 20년 이상 ▶ 58회 추가 합격자 75명 미포함							

-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새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은 물론 국회에서도 공직경력 인정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된 상황

※ 국정과제 [91-1-1] 공정기반 구축(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국가자격시험의 불공정한 특례제도 개선

※ 시험과목 면제 특례제도 폐지 법안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2022.08.01.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대표발의 2022.02.22.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2018.11.19.
-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2018.10.01.

- 현재에도 15종에 해당하는 전문자격사시험이 공직경력 인정제도 (시험 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

- ※ **15종 전문자격사 시험**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공직경력 인정제도 운영 중인 전문자격증 현황】

No.	전문자격사 시험	근거법률	소관부처	시행기관
1	법무사 / 1차·2차	법무사법	법무부	법원행정처
2	세무사 / 1차·2차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3	관세사 / 1차·2차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	보세사 / 1차	관세법	기획재정부	한국관세물류협회
5	행정사 / 1차·2차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	공인회계사 / 1차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7	손해사정사 / 1차·2차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8	보험계리사 / 1차·2차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9	변리사 / 1차·2차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0	경비지도사 / 1차·2차	경비업법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1	공인노무사 / 1차·2차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2	감정평가사 / 1차·2차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3	손해평가사 / 1차·2차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4	소방시설관리사 / 1차·2차	소방시설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5	소방안전관리자 / 1차	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안전협회

- 반면,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은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직경력 인정제도 폐지**(‘17.11.28 해당 조항 삭제)

- ※ 「문화재수리법」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에서 **‘다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삭제

나. 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제도' 관련 응시율·합격률 제각각

- 현재 '공직경력 인정제도'를 운영 중인 전문자격시험(15종)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면제자 응시율이 10%에도 못미치는 상황

※ 지난 5년간('17~'21) 전문자격사시험 중 공직경력 면제자 응시율 10% 이상인 시험은 세무사(19.3%), 경비지도사(32.9%), 감정평가사(13.2%), 소방시설관리사(20.2%)만 해당

【지난 5년간('17~'21) 전문자격사 시험 관련 공직자 응시율·합격률 현황】

(단위 : 명, %)

No.	전문자격명	시험 응시자수 현황		공직면제 합격자수 현황	
		전체 응시자	공직면제 응시자	전체 합격자	공직면제 합격자
1	법무사	20,787	81(0.4%)	620	10(1.61%)
2	세무사	25,856	4,987(19.3%)	3,489	425(12.2%)
3	관세사	5,424	14(0.26%)	515	2(0.39%)
4	보세사	2차 시험 없음, 1차 시험 면제 후 자격 자동부여			
5	행정사	3,628	292(8.05%)	1,429	148(10.4%)
		1, 2차 전부 면제자(합격자) 132,169명			
6	공인회계사	15,702	19(0.12%)	5,110	1(0.05%)
7	손해사정사				
8	보험계리사				
9	변리사	5,807	338(5.82%)	1,011	20(1.98%)
10	경비지도사	38,618	12,688(32.9%)	3,786	579(15.3%)
11	공인노무사	17,765	115(0.65%)	1,521	27(1.78%)
12	감정평가사	5,792	763(13.2%)	890	50(5.62%)
13	손해평가사	61,257	1,141(1.86%)	3,341	48(1.44%)
14	소방시설관리사	11,817	2,387(20.2%)	589	310(52.6%)
15	소방안전관리자	6,335	4,044(63.8%)	472	4,044(856.8%)

▶ 공무원 응시자수와 합격자수는 1차와 2차 시험 면제자수를 합한 숫자임
▶ ()은 공무원 응시율과 합격률임

- 특히, 일부 전문자격시험은 **공직경력 면제자 응시율이 2% 이내로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미미한 실정**

※ 지난 **5년간** 전문자격사시험에서 **공직경력 면제자 시험응시율** 현황

- ▶ 관세사 시험 : 응시율 0.26%
- ▶ 공인노무사 시험 : 응시율 0.65%
- ▶ 손해평가사 시험 : 응시율 1.86%

- 또한 공직경력 면제 혜택을 받은 응시자들도 **최종 합격률이 대부분 10%에 미치는 못하는 상황**

※ 지난 **5년간** 전문자격사시험에서 **공직경력 면제자 시험합격률** 현황

- ▶ 관세사 시험 : 합격률 0.39%
- ▶ 변리사 시험 : 합격률 1.98%
- ▶ 공인노무사 시험 : 합격률 1.78%
- ▶ 손해평가사 시험 : 합격률 1.44%
- ▶ 감정평가사 시험 : 합격률 5.62%

- 이 외에 **주택관리사의 경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경력인정 범위가 실제 주택관리업무와 무관한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공직자에게도 폭넓게 인정하는 측면 존재**

※ 공무원의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주택공기업의 단순 관리업무, 유관단체의 관리 업무 등은 제외할 필요

【참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1.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2.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5.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각종 전문자격시험에서 면제되는 대상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규정

※ 감정평가사의 경우 면제대상 기관이 국토교통부를 포함 7개 기관에 달함

【(예시) 전문자격시험 관련 공직경력 면제자 현황】

전문자격종	면제대상 기관	시험 면제대상 업무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	▶ 감정평가 관련 조사·연구 등 보조업무 ▶ 타당성조사, 평가검토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업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 공시지가·감정평가 관련 제도운영 및 지도 감독 ▶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감사원	▶ 감정평가업무 관련 지도 감독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지도 감독 ▶ 과세시가표준액 조사·결정 관련 지도 감독
	시·도, 시·군·구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 국유재산 관리업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
	국세청 및 소속기관(재산세 관련과)	▶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관세사	기획재정부	▶ 세제실 중 관세정책관, 관세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다자관세협력과, 양자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등 소관업무
	관세청	▶ 관세청 중 공보·홍보, 기획재정·기획예산, 혁신담당·행정관리, 성과관리, 인사, 비상안전·비상계획, 운영지원·세관운영·총무·회계 담당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
	조세심판원	▶ 관세 관련 심판청구 조사관실 업무

2.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무시험 특혜' 제도 운용

- 현재 **입법 미비**로 인해 공직경력 인정 면제자 중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과목면제 또는 무시험 특혜를 제공할 우려 상존

※ 징계처분 받은 자의 공직경력 특례(과목면제·자동부여 등) 불인정(총 6종) :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 보세사는 시험 없이 전문자격 자동부여(무시험) 대상임

【전문자격시험 중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외 징계 근거 현황】

No.	전문자격명	근거법률	시험과목 등 면제 제외 관련 징계 근거
1	법무사	법무사법	없음
2	세무사	세무사법	▶ 탄핵, 파면·해임, 강등 이상 징계받은 자로 2년 미경과인 사람
3	관세사	관세사법	
4	보세사	관세법	
5	행정사	행정사법	▶ 탄핵, 파면·해임,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또는 예산·기금 등과 관련 횡령·배임·절도·사기 등을 이유로 강등 이상 징계받은 사람
6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 탄핵, 파면·해임, 금품·향응수수료 강등 이상 징계받은 사람
7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없음
8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없음
9	변리사	변리사법	없음
10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없음
11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 탄핵, 파면·해임, 금품·향응수수료 강등 이상 징계받은 사람
12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없음
13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없음
14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없음
15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없음

- 공직경력 면제조건 적용 제외 근거를 둔 관세사 등의 자격시험 경우에도 ‘징계처분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 여부 확인보다 ‘공직 경력 인정 면제’ 대상 확인에 치중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자의 경력인정 제출서류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 여부 관련하여 경력심사 실시

【(예시)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시험일부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관세시험페이지(www.Q-Net.or.kr/site/customs)에서 응시원서 접수(단, 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 불가)
관세사시험의 시험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세행정 경력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경력심사(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확인·검증(관세청)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일부면제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접수가 취소(수수료 환불 불가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가)

- 한번 공직경력 인정 면제를 받은 공직자는 이후 자격시험에 재응시할 때 별도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어 면제 이후 발생한 징계처분 확인이 곤란

【(예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적용 제외(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및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②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시행일 : 2020. 7. 30.(시행일 이후 해당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과목면제 적용 제외)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로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서류)

※ 징계사항 미표기 시 인사기록카드 등 별도 서류 추가 제출

② 시험일부면제신청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확인 등을 위해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필요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시험일부면제신청서 서식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nomu>) → 자료실에 다운로드 활용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단,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또한 징계 관련 면제 제외 근거도 자격시험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출서류로는 징계 사유도 알 수 없어 법 적용의 실효성 의문

※ 세무사·관세사·보세사 시험은 징계 사유 불문하고 강등 이상 징계로 2년 미경과자로 제한, 행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시험은 금품·향응 등의 징계 사유로 강등 이상 징계받은 자로 규정

- 금품·향응 등 징계 사유 근거를 규정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로는 확인이 불가능

※ 제출서류인 인사기록카드에는 처분일, 징계종류, 처분기관, 비고 등만 명시

【(예시) 전문자격시험 응시 관련 포상·징계 제출서류】

개인인사기록		포상·징계사항		기준일	2022.04.05
				출력자	
		漢字		Eng	
				주민등록번호	
소속			(2020.12.14~)		
	직위				직위임용일
	직급		(2017.11.17~)		계급
	채용				임용
	연락 [Phone]				[FAX]
		호봉	15		
		[Mobile]			
1. 포 상					
포상일	포상명	공적내용	시행청		
2. 징 계					
처분일	징계종류	처분기관	비고		
	견책		일자		
기간만료					
원본대조필					
인사기록카드					
(포상·징계사항)					

- 공직경력 면제대상 서류심사는 시험 시행(접수)기관에서 수행하나 **징계처분 관련 확인·검증은 소관기관의 업무임에도 근거규정 부재**

※ 시험 시행(접수)기관에서 경력 면제 응시자에 대해 별도로 소관기관에 징계 처분 확인 요청 없음

- 특히, **기관 내부의 징계처분이** 공직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견주어 볼 때 **경미할 뿐 아니라 성범죄, 채용 등의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시험 특혜는 여전히 유효한 실정**

※ 지난 5년간 ○○○○부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86.5% 경징계(감봉·견책) 조치, (특히 '15년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은 감봉 1개월, '16년 성희롱 비위공무원은 구두경고로 종결)

<지난 5년간('13~'17) ○○○○부의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조치 내역>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비위건수	7	41	36	18	17	119
중 징 계	1 (14.3%)	6 (15%)	7 (20%)	0 (-)	2 (12%)	16 (13.5%)
경 징 계	6 (85.7%)	35 (85%)	29 (80%)	18 (100%)	15 (88%)	103 (86.5%)

※ 인사혁신처 '최근 5년간('15~'19)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786명), 경찰청(4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명), 법무부(786명), 해양경찰청(90명) 순

※ 행정안전부 '최근 5년간('15~'19)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1,631명), 서울시(1,118명) 순, 징계양정별로 보면 견책·감봉(884명), 정직(157명), 강등(35명), 해임(30명), 파면(12명) 순

- 국회에서도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까지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인식하에 **공직경력 인정을 제한하는 법안**이 일부 발의된 상황

※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한 관련 법안 발의

-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1.05.28.
-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1.06.10.

3. 공직퇴임 이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장치 미비

가. 공직 퇴임 이후 전문자격서비스의 시장질서를 교란할 우려 상존

- 공직에 재직 중에는 인허가·세무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퇴임 후에는 전문자격증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영위

※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평균연봉 상위 50위권내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포함(전관·일반시험 출신 구분 없음)

※ 국세청 출신, 김안장으로 이직한 전관들의 평균연봉은 퇴직 당시 7,332만원에서 이직 후 46,224만원으로 6.3배 상승('22. 6월 언론보도)

【(예시) 연봉 상위 50위권 중 주요 전문자격사 평균연봉 현황(한국고용정보원)】

(단위 : 만원)

직업	2020년				직업	2019년			
	평균	25%	50%	75%		평균	25%	50%	75%
변호사	9,217	7,000	8,000	10,000	감정평가사	8,823	6,225	6,750	10,000
회계사	7,397	6,000	7,500	9,000	변호사	8,707	5,400	8,000	10,000
세무사	6,701	5,300	6,610	8,000	회계사	8,483	6,000	7,500	10,500
감정평가사	6,600	5,300	6,400	7,500	변리사	8,443	5,950	6,650	8,375
변리사	6,323	5,000	6,000	7,000	보험계리사	7,197	5,500	6,500	8,875
법무사	6,177	5,000	6,000	7,000					

▶ 소득수준은 직업당 평균 30명에게 수집, 직업 대분류별로 평균, 중위 50% 및 상·하위 각 25%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근거로 순위 결정

- 특히, 수임제한 등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는 전관들의 경우 공직경력을 이용하여 전문자격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시험 응시 출신 전문자격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

※ '18년 6월말 기준, 국내 등록변리사수 4,342명(휴직자 5,078명 제외) 중 특허청 출신자 14.2%(617명)임

- 또한 민간경력자 공무원 채용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우대를 통해 공직 진입 문턱이 수월한 반면, 이들이 공직 퇴임 후 전관 특혜를 누릴 소지 다분

※ '14년 기준, 주요 전문자격소지 공무원은 1만8,363명, '19년 민간경력자채용 합격자 중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5급 47.0%, 7급 35.8%에 달함

【'14년 기준 주요 전문자격증 소지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자격소지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 방 공무원
		행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변호사	3,803	1,950	16	1,752	25	7	53
변리사	716	595	1	109			11
법무사	3,416	1,927		1,472	7		10
공인노무사	312	250	1	15			46
공인회계사	311	250	1	26			34
세무사	1,344	1,245	2	55			42
관세사	800	788	6				6
감정평가사	113	96					17
공인중개사	7,548	3,407	19	524	6	48	3,544
계	18,363	10,508	46	3,953	38	55	3,763

※ '17~'21. 1월까지 LH 공공택지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을 **LH 출신 법무사 6명이 1/3 수임(총 지급보수 17억9,366만원의 34%에 해당하는 6억 1,452만원)**한 것으로 확인('21. 국감자료)

【지난 4년간('17~'21.1월) LH 공공택지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법무사 선정 및 계약현황】

구 분	지구 수 (개)	법무사 선정건수 (건)	선정된 법무사 수 (명)	총 지급보수 (천원)
전 체	30	39	28	1,793,665
LH 출신 법무사	11	13	6	614,526
비 율	37%	33%	21%	34%

※ 지난 4년간('17~'20년) LH가 발주한 전체 감정평가용역 금액(482.2억원) 중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수임한 수수료 금액은 전체 감정평가용역 수수료의 23.3%(112.4억원)**에 달함 ('21. 국감자료)

【지난 4년간('17~'20) LH 공공택지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감정평가용역 선정현황】

연도	총 선정내역			LH 출신 선정내역			LH 출신 선정비율		
	수행평가사(명)	수임건수(건)	수수료(억원)	수행평가사(명)	수임건수(건)	수수료(억원)	수행평가사(%)	수임건수(%)	수수료(%)
'17	99	184	71.8	20	62	27.9	20.2	33.7	38.9
'18	128	318	92.0	25	91	29.2	19.5	28.6	31.7
'19	206	441	141.7	26	96	27.9	12.6	21.8	19.7
'20	264	502	176.7	30	91	27.4	11.4	18.1	15.5
계	697	1,445	482.2	101	340	112.4	14.5	23.5	23.3

※ 지난 4년간 LH 감정평가용역과 관련, LH 출신 감정평가사는 1인당 3.36건을 수임하고 1.11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반면, 비출신인 경우 1인당 1.85건, 0.62억원의 수수료를 받음

【지난 4년간('17~'20) LH 출신 여부에 따른 감정평가용역 수임료 비교 현황】

구분	수행 감정평가사 수(명)	수임 건수(건)	수수료(억원)
LH 출신 감정평가사(연평균)	25.3	85	28.1
	1인당	3.36	1.11
비 출신 감정평가사(연평균)	149	276.3	92.5
	1인당	1.85	0.62

○ 또한 전관출신 전문자격사와 현직 간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은 내부정보 유출 등 일부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상존

※ '19년 7월 관세청은 부산의 A 무역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다음 날 A업체 대표에게 접근, 수사 진행상황 등을 알아봐 주겠다는 등 인맥을 과시하고 수임계약을 종용한 전관출신 관세사와 수사정보를 유출한 관세청 팀장을 검찰에 고발('19. 11월 언론보도)

나. 공직퇴임 전문자격사의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 조항 부재

○ 공직퇴임 출신 전문자격사 중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를 제외한 12종 전문자격사 관련 법률에 행위규제 근거가 없는 실정

※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 공무원(공공기관 등 포함)들이 퇴임 이후 법무법인 등에서 활동할 경우 전 소속기관에 대한 수임 활동 등의 행위제한 근거 규정 부재

【전문자격시험 중 공직퇴임 이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 현황】

No.	전문자격명	근거법률	공직퇴임 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조항
1	법무사	법무사법	해당 없음
2	세무사	세무사법	▶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포함)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 제한
3	관세사	관세사법	▶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제한
4	보세사	관세법	해당 없음
5	행정사	행정사법	▶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를 1년 동안 제한
6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해당 없음
7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해당 없음
8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해당 없음
9	변리사	변리사법	해당 없음
10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해당 없음
11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해당 없음
12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해당 없음
13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해당 없음
14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해당 없음
15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해당 없음

- 현재, 공직퇴임 전문자격사의 행위규제도 수임제한으로만 한정, 기타 전문자격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전관출신 또는 전관업체와 위탁계약 등 행위규제는 제외

※ LH의 경우 전국 공공주택단지(1,084개) 중 민간업체 관리대상인 783곳으로 이 중 52.5%(411개)에 해당하는 단지의 위탁관리를 **LH 출신(주택관리사)이 다수 포진한 50개 ‘전관업체’와 10년간 지속 계약**(’20. 10월 국감자료)

<공직퇴임 전문자격사의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 현황>

구 분	수임이 제한되는 업무
변호사법	▶ 제31조(수임제한) :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 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세무사법	▶ 제14조의3(수임제한 등)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관세사법	▶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 2. 관세법인 등의 담당 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 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 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행정사법	▶ 제21조의2(수임제한) : ①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 ② 제1항의 수임제한은 행정사법인에 따른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변리사 자동부여·과목면제 대상 관련 특허청 출신의 특허출원 행위규제 없음

【지난 5년간('12~'17. 8월) 특허청 및 산하기관 직원의 특허출원 및 등록·보유 현황】

구 분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출원	재직 중 출원	재직 중 출원·등록 완료
특허청	57건	1건(상표)	-
산하기관	-	16건	10건

【지난 5년간('12~'17. 8월) 특허청 직원 퇴직(이직) 1년 이내 출원 현황】

구 분	건수	출원인 정보				최종처분
		성명	직급	소속	건수	
특 허	8건	최○○	기술서기관	정밀화학심사과	4건	거절(4)
		이○○	전문임기나급	약품화학심사과	1건	등록(1)
		강○○	기술서기관	차세대수송심사과	1건	등록(1)
		이○○	공업사무관	가공시스템심사과	1건	-
		김○○	공업사무관	응용소재심사과	1건	등록(1)
상 표	30건	최○○	기술서기관	정밀화학심사과	2건	등록포기(2)
		고○○	기술서기관	특허심판원	1건	등록(1)
		배○○	공업사무관	반도체심사과	4건	등록(4)
		서○○	기술서기관	고분자섬유심사과	1건	-
		김○○	고위공무원	특허심판원	1건	-
		정○○	기술서기관	특허심판원	2건	-
		민○○	기술서기관	특허심판원	4건	등록(2), 등록포기(2)
		황○○	행정사무관	디자인2심사팀	1건	등록(1)
		박○○	5급 상당	운영지원과	1건	등록(1)
		이○○	행정사무관	특허심판원	3건	등록(1), 거절(1)
		고○○	공업사무관	정밀화학심사과	1건	등록(1)
		한○○	공업사무관	국제특허심사팀	1건	거절(1)
		한○○	행정사무관	특허심판원	1건	등록(1)
		이○○	기술서기관	심사품질담당관실	1건	등록(1)
		정○○	행정사무관	디자인심사과	1건	등록(1)
		전○○	농업사무관	농림수산식품과	2건	등록(2)
		김○○	방송통신사무관	전력기술심사과	1건	등록(1)
		이○○	기술서기관	정밀화학심사과	1건	등록(1)
		신○○	고위공무원	특허심판원	1건	등록(1)

▶ 공개(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 되지 않았거나 공개 전 무효 또는 취하된 건수 : 19건

【참고】 관계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 및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 현황

- ① 제한사항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에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에 한정하여 **재직 중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 ② 소속기관 : 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③ 공직유관단체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선행기술조사전담기관)**

【지난 5년간('12~'17. 8월) 특허청 소속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구 분	건수	출원인 정보				최종처분
		성명	직급	소속	건수	
특 허	6건	경○○	책임그룹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개발팀)	1건	거절(1)
		최○○	사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통신미디어팀)	4건	등록(2)
		전○○	사원	특허정보진흥센터 (가전부품팀)	1건	-
실용신안	1건	최○○	사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통신미디어팀)	1건	등록(1)
상 표	6건	김○○	책임	특허정보진흥센터 (분류사업팀)	6건	등록(6)
디자인	3건	이○○	선임	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디자인팀)	2건	거절(2)
		오○○	사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상표디자인팀)	1건	등록(1)

IV. 개선방안

1. 국가전문자격제도 운영과정의 공직자 특혜소지 차단

□ 【1안】 전문자격사 시험(15종) '공직경력 특례' 2차 시험 면제 폐지

- 공직경력 인정대상자에 대해 **1차 시험만 면제**하고, **2차 시험과목 면제는 폐지**(유예기간 2년)

※ **전문자격사 시험(15종)** :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보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

- 단, 2차 시험 없이 **1차 시험 면제 후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등은 공직경력 인정 특례 폐지**

※ 보세사 자동부여 : 관세경력 5년 이상인 일반직공무원(「관세법」 개정 전, '19.12.31)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동부여 : 소방공무원 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 ⇒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관세법」, 「행정사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변리사법」, 「경비업법」, 「공인노무사법」, 「감정평가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소방시설법」 등 총 13개 법률에 규정한 전문자격사 시험과 관련하여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면제 등**' 관련 조항 개정

□ 【2안】 전문자격사 시험(15종) '공직경력 특례' 인정제도 전면 폐지

- 현재,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인정하는 **모든 공직경력 특례 유형** (자동자격 부여, 1차 시험 전부 면제, 1차 시험 전부 면제 +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등) **전면 폐지**(유예기간 2년)

- ⇒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관세법」, 「행정사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변리사법」, 「경비업법」, 「공인노무사법」, 「감정평가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소방시설법」 등 총 13개 법률에 규정한 전문자격사 시험과 관련하여 '모든 공직경력 인정 특례 유형' 관련 조항 개정

□ 【3안】 전문자격사 시험(15종) '공직경력 특례' 제도 단계별 폐지

- (1단계) 공직경력 특례를 인정하는 전문자격사 시험의 '2차 시험과목 면제 및 자동자격 부여' 제도 폐지(유예기간 2년)

【참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공직경력 특례' 인정 폐지('17.11.28. 해당 조항 삭제

- 「문화재수리법」 제8조(문화재수리기술자)에서 '다만,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삭제

- (2단계) 1단계 조치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모든 공직경력 인정 특례 유형'을 전면 폐지

- ⇒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관세법」, 「행정사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변리사법」, 「경비업법」, 「공인노무사법」, 「감정평가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소방시설법」 등 총 13개 법률 개정

□ 전문자격시험 관련 면제대상 기관업무 및 경력인정 업무범위 조정

-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의 전문자격시험(15종)에서 시험과목 면제 대상기관의 직접 관련 업무만으로 축소

※ (예시) 제외 업무 : 감정평가사(지도·감독업무, 단순 행정관리업무 등), 관세사 (현장 관세담당업무자 외에 전부 제외) 등

-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경력인정 업무범위에서 직접적인 주택관리 업무와 무관한 지도·감독 및 인·허가업무 등의 경력 삭제

2. 징계처분 받은 자에 대한 '무시험 특혜' 제도 폐지

□ 전문자격사 시험의 '공직경력 인정' 제외 징계처분 대상 근거 신설

- 시험과목 면제 등의 공직경력 인정 제외 대상자 징계처분 근거를 「행정사법」 제9조 제3항을 준용하거나 참고하여 관계법률에 명시

【(예시) 「행정사법」 제9조 제3항 시험의 일부 면제 제외 근거규정】

근거 조항	내 용
제9조(시험의 일부 면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및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험의 일부 면제 제외 대상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하고, 확인·검증절차 근거 마련

⇒ 「법무사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관세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변리사법」, 「경비업법」, 「공인노무사법」, 「감정평가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소방시설법」 등 총 13개 법률에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외 징계처분 및 확인·검증절차' 관련 조항 개정

3. 공직퇴임 이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장치 도입

□ 공직퇴임 전문자격사의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규정 신설

-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규정이 부재한 공직퇴임 전문자격사에 대한 전 소속기관의 수임을 1년 동안 제한

【전문자격시험 중 공직퇴임 이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근거 현황】

No.	전문자격명	근거법률	공직퇴임 후 수임제한 등 행위규제 조항
1	법무사	법무사법	해당 없음
2	세무사	세무사법	▶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 포함)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 제한
3	관세사	관세사법	▶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제한
4	보세사	관세법	해당 없음
5	행정사	행정사법	▶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를 1년 동안 제한
6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해당 없음
7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해당 없음
8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해당 없음
9	변리사	변리사법	해당 없음
10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해당 없음
11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해당 없음
12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해당 없음
13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해당 없음
14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해당 없음
15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해당 없음

⇒ 「법무사법」, 「관세법」,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변리사법」, 「경비업법」, 「공인노무사법」, 「감정평가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소방시설법」 등 총 11개 법률에 **‘공직퇴임 ○○사의 수임제한’** 관련 조항 개정

○ **특허청 직원 및 소속기관 직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자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을 공직 재직시와 퇴직 후 1년 동안 제한**

※ **특허청 소속기관**(특허심판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직유관단체**(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 **‘공직퇴임 변리사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자신의 출원 제한’** 근거규정 신설

붙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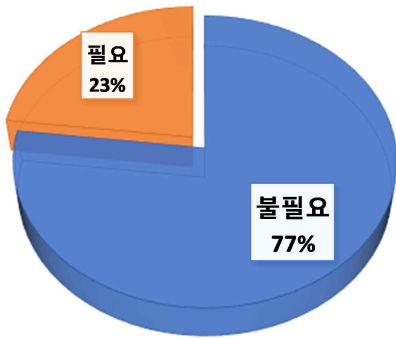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인정제도 설문조사 결과

【1】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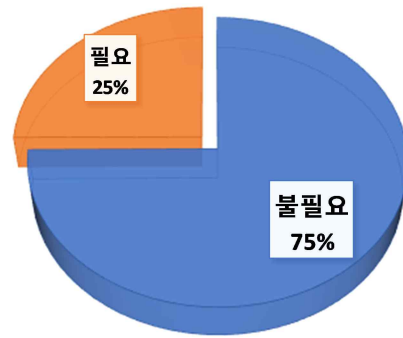
- ▶ 참여자 : 총 6,434명 (일반국민 3,534명, 국민패널 2,900명)
- ▶ 기 간 : <일반> 2022. 9. 8.(목) ~ 30.(금), <국민패널> 9. 15.(목) ~ 21.(수)

①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 특례부여 필요한지?

일반국민(불필요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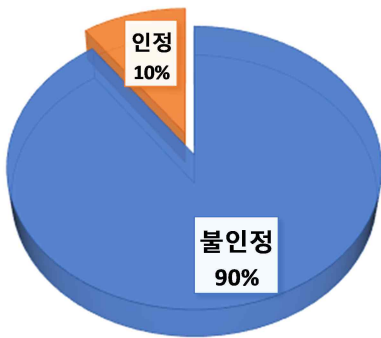


국민패널(불필요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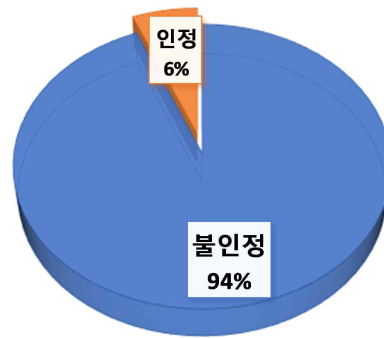


② 징계자에게 공직경력 특례 인정해야 하는지?

일반국민(불인정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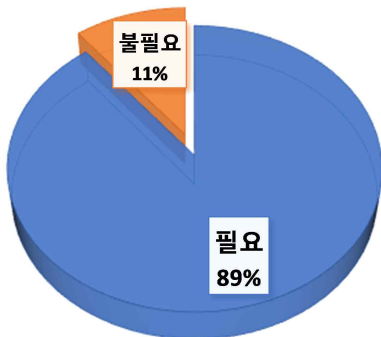


국민패널(불인정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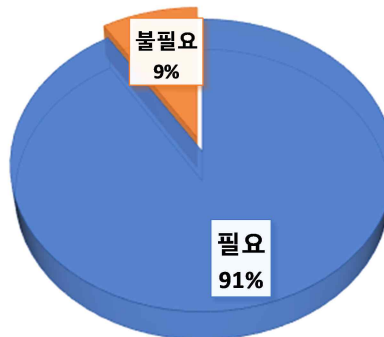


③ 공직 퇴임후 수임제한 등의 행위규제가 필요한지?

일반국민(필요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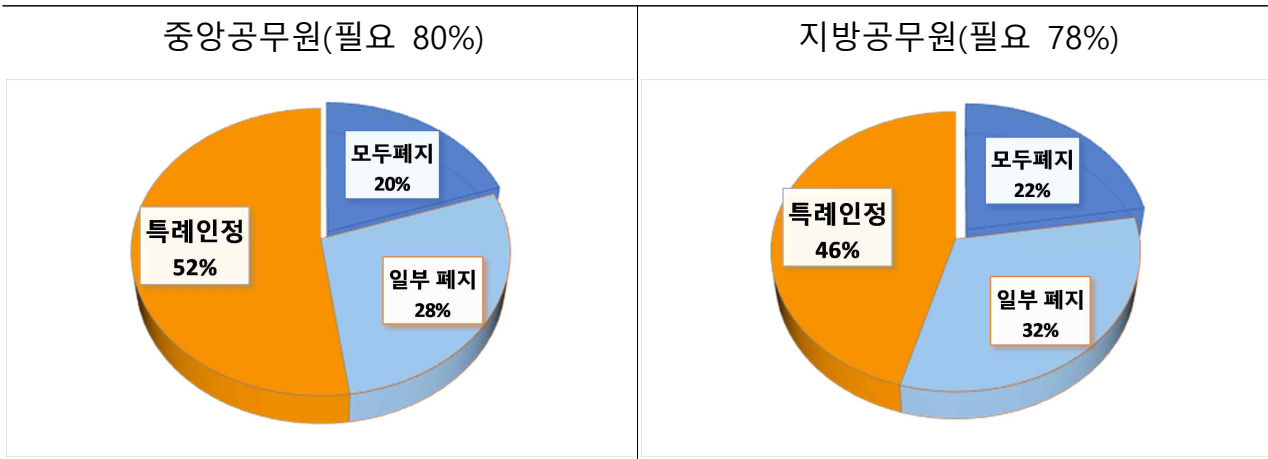
국민패널(필요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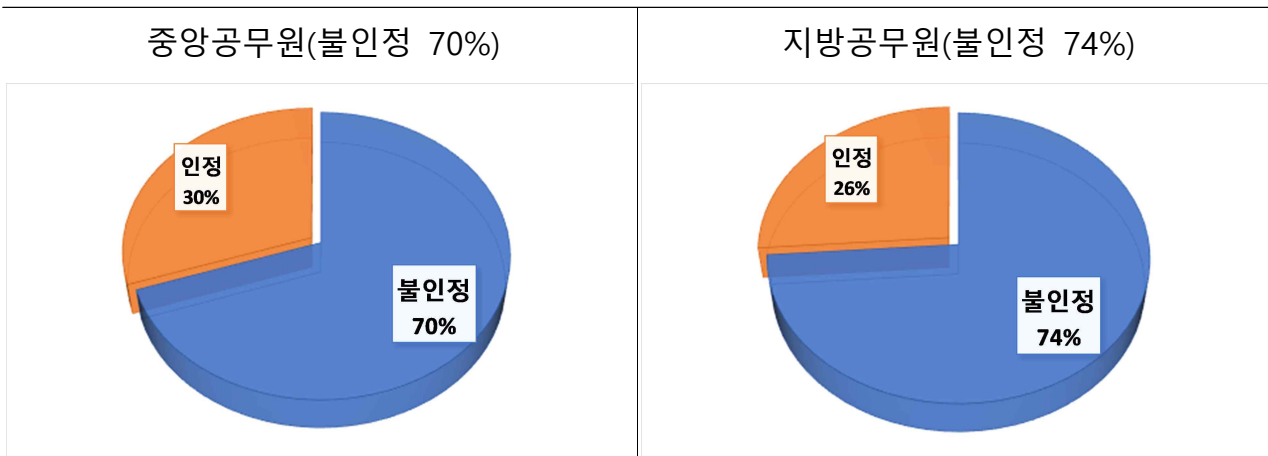
【2】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참여자 : 총 137,546명 (중앙공무원 39,734명, 지방공무원 97,812명)
- ▶ 기 간 : <e-사람> 2022. 9. 7.(수) ~ 20.(화), <인사랑> 9. 8.(목) ~ 21.(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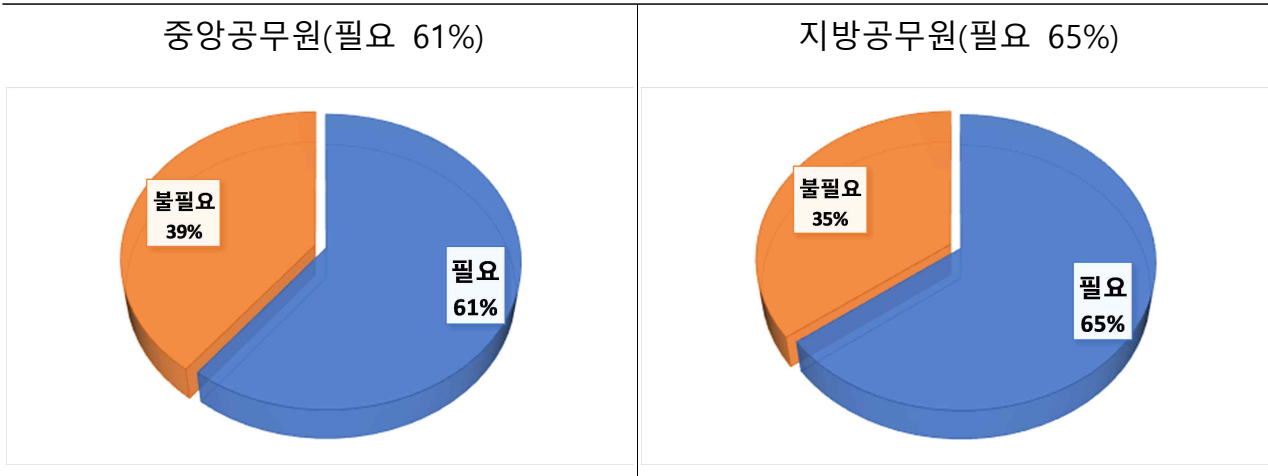
① 국가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인정 특례부여 필요한지?



② 징계자에게 공직경력 특례 인정해야 하는지?



③ 공직 퇴임후 수임제한 등의 행위규제가 필요한지?



붙임2

국가전문자격증의 종류 및 근거법률·시행기관 현황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소관부처	시행기관
1	변호사	변호사법	법무부	법무부
2	법무사	법무사법	법무부	법원행정처
3	세무사	세무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4	관세사	관세사법	기획재정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	보세사	관세법	기획재정부	한국관세물류협회
6	행정사	행정사법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	기록물관리전문요원	공공기록물법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8	기업재난관리사	기업재해경감법	행정안전부	기업재해경감협회
9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0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11	보험계리사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12	변리사	변리사법	특허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3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경찰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4	자동차운전면허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5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6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	도로교통법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7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8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9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1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2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3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4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5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공단
26	건축사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소관부처	시행기관
27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28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29	택시운전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0	버스운전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1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2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3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4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5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6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7	초경량비행장치조종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8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39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0	항공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1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2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3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44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협회
4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46	스포츠지도사(5종)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연수원
47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연수원
48	경주선수	경륜·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49	경주심판	경륜·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50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
51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52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3	사서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54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5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6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7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8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59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국어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1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3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인력공단
64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65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66	수의사	수의사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67	환지사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68	말조련사	말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69	장제사	말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70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71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2	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3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4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5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인력공단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76	도선사	도선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77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8	고속구조정조종사	선원법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79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80	의료관리자	선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1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2	통신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3	항해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4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5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6	기관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7	운항사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88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89	수송구조사	수상구조법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90	무선통신사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1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92	가맹거래사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9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4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여성가족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5	경영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6	기술지도사	경영기술지도사법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인력공단
97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98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99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100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안전협회
101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소방청	한국산업인력공단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102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03	어린이집원장	영유아교육법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104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한국영양교육평가원
105	보육교사	영유아교육법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106	장례지도사	장례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7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8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09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10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11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12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3	전문의	의료법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114	의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5	간호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6	간호조무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7	치과의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8	한의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19	조산사	의료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0	물리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1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2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3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4	치과기공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5	치과위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126	안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8	약사	약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29	한약사	약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0	한약조제사	약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1	위생사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2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3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4	안마사	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5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6	보조공학사	장애인보조기기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7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인 국 가 시 험 원
138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생산성본부
139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공회의소
140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산림청	산림청지정기관
141	목조기술자	목재이용법	산림청	산림청
142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법	산림청	산림청
143	산림기술자	산림자원법	산림청	산림청
144	산림치유지도사	산림휴양법	산림청	산림청
145	수목치료기술자	산림보호법	산림청	산림청지정기관
14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수도법	환경부	한국산업인력공단
147	사회환경교육지도사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부	환경부
148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149	환경측정분석사	환경시험검사법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No.	전문자격명	근거 법령	주관부처	시행기관
150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2종)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2	원자로조종감독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3	핵연료물질취급감독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4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55	보건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56	사서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57	실기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58	영양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59	전문상담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60	정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61	준교사	교원자격검정령	교육부	교육부
162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교육부	교육부
163	군항공교통관제사	군용기운용법	국방부	국방부
164	국방사업관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한국생산성본부
165	수중발파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66	심해잠수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67	폭발물처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68	항공장구관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69	헬기정비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0	영상판독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1	국방보안관리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2	낙하산전문포장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3	함정손상통제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4	국방무인기조종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175	수중무인기조작사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부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전관특혜·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2022. 11.



국민권익위원회

##

I. 추진배경	47
II. 일반현황	48
III. 문제점 분석	50
1.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 등에 공직자 재취업 여전	50
2. 취업심사대상자의 임의취업을 용인하는 심사 관행	52
3. 퇴직자의 ‘입장·태도·의견 바꾸기’가 만연한 구조	54
IV. 개선방안	67
1. 공공기관 2급 이상으로 취업심사 직원대상 범위 확대 ...	67
2. 퇴직공직자 재취업시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69
3. 前 소속기관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강화 ...	72

[붙임] 최근 6년간('15.1월~'20.8월) 부처별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

I. 추진배경

- 그동안 전·현직 공직자들간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관피아’ 논란**을 야기시키고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등 **전관특혜 관행** 여전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91(실천과제)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 이러한 **공직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전관특혜 관행**이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미비

- 최근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일부 공직유관단체와 사무위탁 협회 등으로 확대**하였으나 **업무 연관성 높은 단체 등으로 재취업** 여전

※ 국토교통부는 '17년 이후 4급 이상 재취업 퇴직자 25명 중 14명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산하기관·비영리단체에 취업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4년간('17~'20.9월) 전체 재취업 퇴직자 27명 전원 산하기관·관련기관 취업

- 현재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된 퇴직공직자들이 前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입장·태도·의견 바꾸기’** 행태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하기엔 역부족**

※ 관계 법률에 대부분 공직유관단체는 **취업심사대상자를 임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 중인 민간업체는 총 177개사, 이 중 **취업심사 제외업체는 125개사(70.7%)**에 달함

- 따라서 **공직사회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인 기득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전관특혜를 타파**하고자 관계기관, 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필요**

Ⅱ. 일반현황

가. 재산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기관

- '19년 현재, 재산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수는 총 14만1,758명, 취업심사신청자 948명 중 취업가능 739명으로 **승인율 78%**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각 호 대상자

- '21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수는 총 2만284개로 영리분야 1만6,002개, 비영리분야 1,537개, 특정분야 2,745개 확정

※ 취업심사대상기관 구분(「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제1호, 제3호~제12호)

분야	구 분	대상기관수	증/감	비고
영리	소 계	16,002개	(증) 216개	
	사기업체	15,819개	(증) 195개	자본금 10억 ↑, 연간외형거래액 100억 ↑
	법무법인 등	41개	(증) 6개	연간외형거래액 100억 ↑
	회계법인	58개	(증) 8개	연간외형거래액 100억 ↑
	세무법인	80개	(증) 8개	연간외형거래액 50억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	(감) 1개	연간외형거래액 100억 ↑
비영리	소 계	1,537개	(증) 31개	
	시장형공기업	16개	변동없음	「공공기관운영법」 지정 공공기관 350개
	공직유관단체	205개	(증) 14개	「인사혁신처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 1,282개
	사립대학 등	640개	(감) 2개	
	종합병원 등	507개	(증) 15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	(증) 4개	기본재산 100억 ↑
특정	소 계	2,745개	(증) 1개	
	합작법무법인	-	-	
	방위산업분야	53개	변동없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점 등
	국민안전분야	152개	(증) 4개	인증·검사·평가 등 수행 사기업체 등
	사립학교 등	2,540개	(감) 3개	

나.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규정

【퇴직공직자의 준수의무 사항】

-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

※ 재산공개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

- **(취업제한)** 퇴직일로부터 **3년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 심사대상기관의 취업이 제한

【전·현직자의 위반시 벌칙규정】

주 체	위 반 행 위	벌 칙
▶ 공직자(전직, 취업심사대상)	○ 취업승인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행위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 상대로 부정청탁 또는 알선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전·현직 재산등록업무 담당자)	○ 재산등록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직자(현직)	○ 공직자윤리위의 소명요구에 거짓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행위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공직자(현직, 취업심사대상) ▶ 공직자(현직, 취업심사대상) ▶ 공직자(현직, 취업심사대상) ▶ 공직자(현직, 재산공개대상) ▶ 공직자(현직, 재산공개대상) ▶ 공직자(전직, 취업심사대상) ▶ 공직자(전직, 취업심사대상)	○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내 마치지 아니한 행위 ○ 재산등록을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한 행위 ○ 공직자윤리위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 ○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행위 ○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 퇴직 후 2년간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과태료 (1천만원 이하)

III. 문제점 분석

1.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 등에 공직자 재취업 여전

- '14.12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관계법령이 개정·시행되었으나 취업심사승인율 높은 수준(인사혁신통계연보)

※ 취업심사승인율 추이 : ('14) 80.4% → ('16) 82.8% → ('18) 83.9% → ('19) 78.0%

※ 최근 6년간('15~'20.8월)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가능·승인율 현황

- ▶ 90% 이상 : 국가정보원(98.1%), 기획재정부(96.6%), 검찰청(94.1%), 감사원(93.2%), 산업통상자원부(92.3%), 외교부(90.9%), 관세청(90.4%) 등 7개 부처
- ▶ 80%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89.7%), 국방부(88.8%), 행정안전부(88.0%), 해양경찰청(88.0%), 금융위원회(87.5%), 보건복지부(87.5%) 등 20개 부처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요 강화내용('14.12.30)】

-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 3년으로 연장
- ▶ 영리사기업체 취업제한 →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 공직유관단체, 대학설립법인·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법인까지 확대
-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 자본금 50억원 → 10억원, 연간외형거래액 150억원 → 100억원 하향 조정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 및 임원 임명·승인 협회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
- ▶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기준 : 5년간 소속부서 업무 → 소속기관업무로 확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 취업심사 결과 공개 등

- 이로 인해 현직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퇴직자와의 접촉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충돌 회피할 수 있는 여건 불가능

※ 이해충돌 사례('20.10월 국감자료)

- ▶ '20.1월 기준 10대 로펌에서 활동 중인 퇴직공직자수는 300명. 이 중 5대 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소속이 88%에 달함.
- ▶ 지난 3년간 공정위 방문기록(행사, 업무협의, 회의 등 사유) 확인결과, 퇴직공직자의 공정위 방문횟수는 5,419회, 이 중 김앤장 2,744회, 광장 320회, 태평양 353회, 세종 295회, 율촌 398회로 현직자와 접촉함
- ▶ 지난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평균 패소율 21.7%, 5대 로펌 담당사건의 평균 패소율은 26.7% 수준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일부 공직유관단체와 사무위탁 협회로 확대하였으나 업무 연관성 높은 단체 등에 재취업 여전

※ 소관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재취업 현황

- ▶ 국토교통부 : '17년 이후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25명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산하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14명 취업

【국토교통부 : 재취업 기관】

- ▶ SR 대표이사, 건설기술교육원 본부장,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화물복지재단, 주택관리사협회, 국토정보공사, 국립항공박물관,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 ※ 취업제한 여부 : (주) SR(○), 건설기술교육원(X),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국가철도공단(舊, 한국철도시설공단)(○), 화물복지재단(X), 주택관리사협회(X), 국토정보공사(X), 국립항공박물관(X), 한국부동산연구원(X)

- ▶ 관세청 : 최근 4년간('16~'19.8월) 전체 재취업자(112명) 중 56명이 면세사업허가권을 가진 유관단체인 (사)한국면세점협회(취업심사대상협회)에 취업

- ▶ 복지부 : 최근 4년간('17~'20.9월) 전체 재취업자(27명) 중 22명이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 취업, 이 중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 해당

【복지부 : 취업심사대상기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한의약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부 : 취업심사 제외기관】

-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

- ▶ 식약처 : 최근 4년간('17~'20.9월) 전체 재취업자(27명) 전원이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 취업

【식약처 : 취업심사대상기관】

-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식품회사, 제약회사)

- ※ 각종 인가·허가·승인·재정보조 등 지시·감독업무 위치에 있던 퇴직자가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단체·협회·업체에 재취업하여 로비창구 역할 수행

2. 취업심사대상자의 임의취업을 용인하는 심사 관행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 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통해 가능·승인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취업하는 사례 다수**

※ 지난 6년간('13~'18.6월) 임의취업자 1,222명 중 과태료 부과요청건수 423건 (34.6%), 형사고발 2건, **과태료 면제건수 797건(65.2%)**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최근 5년간 임의취업자(**1,303명**) 중 **55.7%(726명) 취업가능·승인 허용**

- ▶ 2020. 1월~ 6월 : 174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80명 / **취업가능·승인자 94명**)
- ▶ 2019. 7월~12월 : 133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63명 / **취업가능·승인자 70명**)
- ▶ 2019. 1월~ 6월 : 170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63명 / **취업가능·승인자 83명** / 보류 24명)
- ▶ 2018. 7월~12월 : 106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51명 / **취업가능·승인자 55명**)
- ▶ 2018. 1월~ 6월 : 153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63명 / **취업가능·승인자 88명** / 보류 2명)
- ▶ 2017. 7월~12월 : 102건 (취업제한대상자 등 41명 / **취업가능·승인자 61명**)
- ▶ 2017. 1월~ 6월 : 135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45명 / **취업가능·승인자 89명** / 보류 1명)
- ▶ 2016. 7월~12월 : 103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52명 / **취업가능·승인자 51명**)
- ▶ 2016. 1월~ 6월 : 145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57명 / **취업가능·승인자 88명**)
- ▶ 2015. 7월~12월 : 82명 (취업제한대상자 등 35명 / **취업가능·승인자 47명**)

- 공직유관단체 임원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 **취업심사 없이 민간업체에 임의취업자 다수 발생**

※ (**권익위 실태조사**) 4개 향만공사 확인결과, 부산향만공사(7명), 인천향만공사(5명), 여수광양향만공사(2명) 등 **총14명 임의취업 사례 확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업무 관련자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4개 항만공사 퇴직자 민간업체 재취업자 현황('16년 권익위 실태조사)】

연번	퇴직자 정보				재취업 정보			항만공사 입사 전소속	비고
	기관명	성명	직급	퇴직일	업체명	직급	취업일		
1	부산 항만 공사	이○○	사장	08.07.16	A	대표이사	10.03.19	해양수산부	★
2		김○○	본부장	14.02.04	B	사장	14.02.10	해양수산부	★
3		정○○	본부장	11.06.30	C	부회장	11.07.01	해양수산부	★
4		김○○	본부장	08.05.22	D		08.05.23	-	
5		황○○	본부장	14.02.04	E			-	
6		박○○	임원	15.03.11	F		15.04.27	해양수산부	★
7		윤○○	임원	09.12.15	G	사장		해양수산부	
8		최○○	1급	09.06.30	H	부사장	09.07.01	해양수산부	★
9		정○○	1급	15.03.01	I		15.03.02	해양수산부	★
10		정○○	1급	09.06.30	J	부회장		해양수산부	
11		최○○	1급	15.01.01	K	전무		해양수산부	
12		안○○	1급	09.06.30	L	전무		해양수산부	
13		최○○	4급	06.02.06	M		15.06.19	-	
14		김○○	4급	09.06.30	N		14.08.01	-	
15	인천 항만 공사	김○○	사장	11.08.18	O	사장		해양수산부	
16		홍 ○	본부장	08.08.07	P	부사장		해양수산부	
17		최○○	본부장	11.10.17	Q	부회장	11.10.17	해양수산부	
18		박○○	본부장	14.02.28	R			해양수산부	★
19		박○○	본부장	09.08.31	S			해양수산부	
20		신○○	1급	09.12.31	T	전무	10.07.01	해양수산부	★
21		곽 ○	1급	09.12.31	U		11.12.19	해양수산부	★
22		함○○	1급	14.11.19	V			해양수산부	
23		김○○	2급	09.06.15	W			-	
24		이○○	2급	09.06.15	X			해양수산부	
25		김○○	4급	09.06.15	Y			-	
26		오○○	-	-	Z		11.09.01	-	
27	여수광양 항만공사	이○○	본부장	14.11.12	AA	사장	14.11.17	해양수산부	★
28		남○○	1급	11.05월	BB	사장	11.08월	해양수산부	창업
29	울산 항만공사	윤○○	본부장	15.08.15	CC			해양수산부	
30		김○○	1급	14.09.26	DD	대표이사	14.10월	해양수산부	파면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 영리사기업체(자본금 10억, 매출액 100억 이상)

3. 퇴직자의 '입장·태도·의견 바꾸기'가 만연한 구조

- 현행 제도로는 퇴직공직자들이 前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입장·태도·의견 바꾸기' 행태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인 실정

※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해당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 (21,138개)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통해 취업 가능(취업심사승인을 평균 80%)

※ 취업심사대상은 ① 영리사기업체(자본금 1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15,819개 ② 법무/회계법인(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상) 99개 ③ 세무법인(연간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80개 등으로 '21년도 지정업체는 16,002개에 불과(전체의 약 2.1%)



※ 취업심사대상 공직자 : '19년 기준 전체 공무원(110만4,508명) 중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 7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14만1,758명(12.8%) 해당

【참고】 선진외국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도입 사례

① OECD의 「로비활동 투명성 및 청렴성(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주요내용

- ▶ 공익성 담보를 위한 로비활동 내역 및 로비스트 명단을 공개하고, 이를 등록부에 기록·보관
- ▶ 공직자들의 퇴직 이후 '입장·태도·의견 바꾸기' 방지를 위하여 前 소속기관 대상 로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운영

② 사외이사 선임시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근거규정

- ▶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기업지배규정(Corporate Governance Rules)에 따르면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의 경우 3년까지 냉각기간을 둠
- ▶ (영) 금융보고위원회(FRC) 기업지배통합코드(FRC 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에 따르면, '비집행이사(non-executive director, NED)'의 경우 3~5년까지 냉각기간 규정
- ▶ (프) 상장기업 지배구조규정에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의 경우 5년까지 냉각기간을 둠

- **(영리분야)** 영리사기업체들 중 매출의 상당부분이 공공수주에서 발생하는 업종은 업무상 관계를 가져 온 퇴직공직자 영입이 절실히 필요

※ 대부분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취업심사대상자가 임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사업부서 2급 이상 부서장들이 취업심사 없이 업무관련업체에 재취업**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업무 관련자

1.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설계업체의 공공수주 비중을 무시**한 채 단순히 자본금과 외형거래액만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 제외 민간업체의 퇴직공직자 영입이 일반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사례 1) **해양수산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 중인 민간업체는 총 177개사, 이 중 **취업심사 제외업체는 125개사(70.7%)**에 달함('15.11월 위원회 실태조사)

【항만 관련 퇴직공직자(272명)의 민간업체 재취업 현황('15년 권익위 실태조사)】

전 체		취업심사 대상		취업심사 제외	
업체수	취업자수	업체수	취업자수	업체수	취업자수
177(100%)	272(100%)	52(29.4%)	113(41.5%)	125(70.6%)	159(58.5%)

▶ (사례 2) **국가철도공단**은 '14년 각종 입찰·납품비리로 공직자윤리법 개정 원인을 제공

<「철도 선후배 유착실태와 대응방안」 보고서('13.8월 제142회 이사회 의사록)>

- ▶ 퇴직공직자 중 철도관련업체에 177명(종합건설사 32명, 용역회사 74명, 기타 71명)이 근무하고, 前 해외사업본부장이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
- ▶ 증언내용 중에는 내부직원과 잦은 접촉으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까지 가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누구는 어느 업체편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진술 확보

【지난 5년간 공단 퇴직자(90명) 영입 민간업체 외형거래규모 현황('15년 권익위 실태조사)】

업 구 분	종 분	전 체		취업심사 대상		취업심사 제외	
		업체수	취업자수	업체수	취업자수	업체수	취업자수
공	사	15	23	14	22	1	1
용	역	40	67	24	45	16	22
전	체	55	90(100%)	38	67(74.4%)	17	23(25.6%)

- ▶ (사례 3) 지자체 기술직(토목, 건축 등)공무원의 경우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없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민간업체 재취업** 빈발('20.1월 언론보도)

- 공직유관단체의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그 전 소속기관의 계약건수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

※ 공공기관 퇴직공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 사례

- ▶ (사례 1) **4개 항만공사와** 지난 5년간('11~'15) 퇴직공직자 재취업 주요업체(15개사, 78명)가 **계약한 건수 235건, 계약한 금액 1,655.3억원**에 달함('15.11월 위원회 실태조사)

【지난 5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 주요업체 계약 현황('16년 권익위 실태조사)】

연번	업 체 명	취업자수 (해항회 포함)	계약건수	계약금액 (억원)	비고(전 소속)
1	A	14	44	220.0	부산항만공사
2	B	12	17	111.5	부산항만공사
3	C	9	15	29.2	해항회(해수부)
4	D	8	32	163.9	여수광양항만공사
5	E	6	9	20.6	인천항만공사
6	F	6	13	64.8	인천항만공사
7	G	5	7	6.0	해항회(해수부)
8	H	5	9	8.8	인천항만공사
9	I	5	8	30.9	해항회(해수부)
10	J	2	56	298.8	인천항만공사(서** 퇴직)
11	K	2	10	31.5	부산항만공사
12	L	1	5	7.6	부산항만공사
13	M	1	5	12.6	부산항만공사
14	N	1	2	26.4	여수광양항만공사
15	O	1	3	622.7	인천항만공사
	15개사	78	235	1,655.3	

* 비고 : 해수부 및 4개 항만공사(2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했었거나 취업 중인 경우

- ▶ (사례 2) 국가철도공단과 '09년 이후 공단퇴직자가 다수 취업한 주요 민간업체 (10개사) 확인결과, **최근 5년간 공단방문횟수 12,950회, 수주건수 261건, 총 수주금액 2.6조원**에 달함('15.6월 위원회 실태조사)

【공단출신 주요 민간업체 재취업자(34명)와 수주 연관성 비교('15년 권익위 실태조사)】

(단위 : 백만원)

분야	업체명	재취업자수	공단방문횟수	수주내역		
				계약금액	계약건수	계약건수/년
공사	A 업체	2	880	851,893	8	1.6
	B 업체	2	534	503,208	5	1.0
	C 업체	2	324	335,934	6	1.2
	D 업체	2	941	327,844	3	0.6
	E 업체	2	1,471	318,705	5	1.0
용역 (설계·감리)	㉠ 용역사	5	1,987	91,343	62	12.4
	㉡ 용역사	5	1,685	90,382	52	10.4
	㉢ 용역사	5	3,432	55,428	59	11.8
	㉣ 용역사	5	1,005	12,301	31	6.2
	㉤ 용역사	4	691	34,305	30	6.0
계		34	12,950	2,621,343	261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재직시 발주사업을 관리한 후 수주업체에 취업하거나 퇴직 후 전 소속기관의 각종 발주 용역사업 등에 참여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취업 업체와의 특혜성계약 사례

- ▶ (사례 1) 재직시 임원 또는 팀장으로 발주사업을 관리한 후 퇴직 후 수주업체에 취업

- 여수광양항만공사 이○○(사장)는 '14.11.12일자 퇴직 후 A업체 사장으로 '14.11.17일자 취업 : 계약 체결 당시 운영본부장으로서 해당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한 용역사업을 관리한 후 A업체로 취업
- 부산항만공사 김○○(임원)은 '14.02.04일자 퇴직 후 B업체 사장으로 '14.2.10일자 취업 : 퇴직 전 건설본부장으로서 관리한 용역사업 3건을 B업체가 수주(24억원), 이후 B업체 사장자격으로 전 소속기관의 발주 용역사업 5건에 입찰하여 28여억원 수주
- 인천항만공사 최○○(임원)은 '11.10.17일자 퇴직 후 C업체 부회장으로 취업 : 퇴직 전 건설본부장으로서 관리한 용역사업 2건을 C업체가 수주, 이후 해당업체로 재취업하여 전 소속기관의 용역사업 4건(2.8억원) 계약체결
- 인천항만공사 신○○(1급)은 '09.12.31일자 퇴직 후 D업체 전무로 '10.07.01일자 취업 : 퇴직 전 D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한 용역사업의 담당 팀장으로 개입한 의혹, 이후 해당업체로 취업

- ▶ (사례 2) 항만공사 임직원들이 퇴직 후 전 소속기관의 각종 발주 용역사업 등에 이해 관계자로 직접 참여

- 부산항만공사 최○○(1급)은 '09.06.30일자 퇴직 후 E업체 부사장으로 '09.07.01일자 취업 : 이후 전 소속기관의 발주 용역사업 3건(20여억원)에 책임기술자로 참여하거나 수주
- 부산항만공사 김○○(임원)는 '08.05.22일자로 퇴직 후 F업체에 '08.05.23일자 취업 : 이후 전 소속기관의 발주 용역사업 8건(14.8억원) 수주
- 부산항만공사 정○○(임원)은 '11.06.30일자 퇴직 후 G업체 부회장으로 '11.07.01일자 취업 : 이후 전 소속기관의 발주 용역사업 14건(43.3억원) 수주
- 인천항만공사 홍○(임원)은 '08.08.07일자 퇴직 후 H업체 부사장으로 취업 : 퇴직 당시 근무부서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1건(3.2억원)에 입찰참여업체 당사자로 참여하여 수주

- ▶ (사례 3) 항만공사 퇴직자가 창업(설립)한 민간업체에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 몰아주는 사례 발생

- 여수광양항만공사 남○○(1급)은 '11.08.01일자 퇴직 후 I업체 설립 : 이후 전 소속기관의 시설 종합관리용역사업 2건(계약금액 26.4억원) 수주
- 여수광양항만공사 전신인 컨테이너부두공단 퇴직자 길○○이 J업체 설립 : 여수광양항만공사 오○○(2급)은 '12.05.10일자 퇴직 후 J업체에 취업, 이후 전 소속기관 용역사업 4건(계약금액 11.8억원) 수주

- 또한 해양수산부 퇴직자단체(해항회) 또는 항만공사 퇴직자 등이 관련업체에 재취업하여 전 소속기관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실정

※ 해양수산부 ○○항건설사무소의 경우 해항회 7명(이 중 항만공사 퇴직자 4명) 참여

【항만 분야 기술자문위원 풀(Pool) 구성 분포('16년 권익위 실태조사)】

구 분	인적구성	인원(%)	비 고
해양수산부 ○○항건설사무소 (70명)	관련업체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50(71.4) 1(1.4) 5(7.2) 14(20.0)	해항회 7명, 이 중 4명은 각 항만공사 퇴직자 포함
○○항만공사 (19명)	관련업체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9(47.4) 0(0.0) 2(10.5) 8(42.1)	해항회 7명, 이 중 2명은 항만공사 퇴직자이고 1명은 항만공사 현직자 포함

※ ○○항만공사 설계자문에 참여한 위원의 소속 민간업체가 해당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자로 선정

【○○항만공사 설계자문 및 용역사업 계약사례('16년 권익위 실태조사)】

용역사업명	설계자문 일 자	설계자문위원 소속		계약일자	계약자 (공동도급자 포함)
		소속	인원		
○○항 ○○○○○○ 축조 공사 ○○○○○○용역	'13.05.24	(주)○○○○○○○공사 K업체 ○○대학교 교수 한국○○○○○협회 ○○대학교 교수 ○○아이인오텍	1 2 1 1 2 1	'13.10.11	K업체
○○○○○(1단계) 하부시설 및 ○○○○○○○(2공구) 건설공사 ○○○○○○○용역	'13.10.08	(주)○○엔지니어링 (주)○○○○기술단 한국○○○○○연구원 L업체 시○ ○○대학교 교수 (주)○○다이나믹스 ○○○○○○○기술	1 1 1 1 1 1 1 1	'13.11.09	(주)○○○○○기술단 (주)○○이엔씨 L업체 (주)○○엔지니어링

- **(비영리분야)**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인허가·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가 제한되어 **상당수 공직유관단체, 산하 특수법인 등이 퇴직자 재취업 통로로 활용**

※ '21년 기준, **전체 공직유관단체(1,282개)** 중 취업심사대상 공직유관단체(시장형 공기업 16개, 공직유관단체 204개)는 **220개로 17.2%**에 불과

- **중앙부처 4급 이상 퇴직공직자 등은 취업심사대상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공직유관단체에 심사 없이 취업이 용이한 구조**

※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 중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기관 상당수 존재

-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36개 중 9개 제외)**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환경공단
- ▶ **준정부기관(96개 중 73개 제외)** :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 ▶ **기타공공기관(218개 중 179개 제외)** : 건설근로자공제회,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주), 한국여객선항공단,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등

【주무부처별 산하 공공기관의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수			심사비율	비고 (취업심사대상기관)
	전체	심사대상	심사제외		
교육부	22개	14개	8개	63.6%	서울대학교병원 외 13
국토부	28개	13개	15개	46.4%	한국공항공사 외 12
산업부	40개	18개	22개	45.0%	한국전력공사 외 17
해수부	17개	6개	11개	35.3%	부산항만공사 외 5
행안부	3개	1개	2개	33.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환경부	12개	3개	9개	25.0%	한국환경공단 외 2
고용부	12개	2개	10개	16.7%	근로복지공단 외 1
복지부	27개	4개	23개	1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 3
과기부	47개	6개	41개	12.8%	한국전기연구원 외 5
문체부	32개	3개	29개	9.4%	게임물관리위원회 외 2
농식품부	12개	1개	11개	8.3%	한국농어촌공사
국조실	25개	-	25개	-	
기재부	4개	-	4개	-	
중기부	11개	-	11개	-	
외교부	3개	-	3개	-	
법무부	3개	-	3개	-	
국방부	3개	-	3개	-	
여가부	5개	-	5개	-	
통일부	2개	-	2개	-	
원안위	3개	3개	-	1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외 2
방통위	2개	-	2개	-	
금융위	8개	-	8개	-	
공정위	2개	-	2개	-	
식약처	4개	4개	-	1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외 3
인사처	1개	-	1개	-	
보훈처	3개	-	3개	-	
경찰청	1개	1개	-	100%	도로교통공단
소방청	1개	1개	-	10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농진청	1개	1개	-	10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방사청	2개	2개	-	100%	국방기술품질원 외 1
기상청	3개	1개	2개	33.3%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청	4개	1개	3개	25.0%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5개	-	5개	-	
관세청	1개	-	1개	-	
문화재청	1개	-	1개	-	

※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사례

- ▶ 특허청 : '12~'17.8월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고위직 퇴직자 16명이 퇴직과 동시에 산하기관에 재취업. **특허청이 각종 사업의 대부분을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17년 특허청의 발주사업 대비 산하기관 점유율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8월
발주사업 점유율(%)	59건 (31.6%)	67건 (35.6%)	67건 (36.2%)	63건 (36.2%)	58건 (31.7%)	64건 (41.8%)
수의계약 점유율(%)	49건 (83.1%)	48건 (71.6%)	51건 (76.1%)	46건 (73.0%)	39건 (67.2%)	41건 (64.1%)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 참여기업 심사원으로 재취업 다수 확인.(**지난 10년간 재취업자 92%가 3개 기업에 취업, 3개 기업이 전체 예산의 78% 독점**)

【'20년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사업체 조사원 대비 퇴직공무원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9월
상표	58.8%	56.8%	54.5%	44.6%
디자인	55.6%	55.6%	54.5%	46.4%

▶ 산림청 : '18.10월 기준, 산림청 산하기관 및 협회, 사단법인 등에 21명의 퇴직자 취업

【'18년 산림청 산하기관 및 협회, 사단법인내 퇴직공무원 재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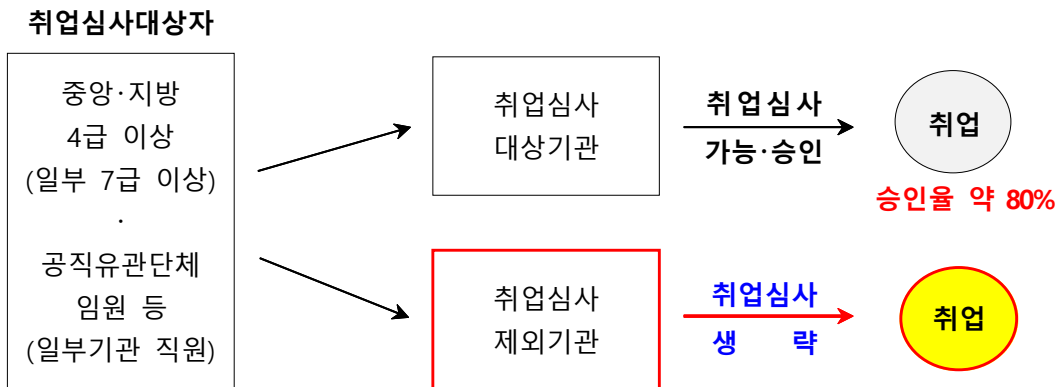
기관명	직위	성명	퇴직일	퇴직직급	비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사무처장 교육사업부장	강○○ 조○○	17.01.27 15.10.31	기술서기관 기술서기관	특수법인 (취업심사X)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	김○○	15.02.10	고위공무원	
한국산지보전협회	회장	배○○	15.10.31	고위공무원	
사방협회	사무처장 연구조사처장	이○○ 용○○	12.12.31 15.12.31	서기관 기술서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본부장	김○○	16.06.30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심사X)
한국수목원관리원	이사장	김○○	17.07.30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심사X)
	기획운영본부장	박○○	17.02.28	고위공무원	
	고객시설관리부장	안○○	17.02.28	서기관	
	운영지원실장	한○○	17.02.28	서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진흥원장	윤○○	15.01.10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심사X)
	사무처장	김○○	15.03.31	고위공무원	
	사업운영본부장	홍○○	16.03.31	서기관	
	국립횡성숲체원장	장○○	16.04.30	기술서기관	
	국립장성숲체원장	박○○	15.06.30	기술서기관	
	국립청도숲체원장	김○○	16.04.30	서기관	
	운영관리부장	김○○	17.06.30	기술서기관	
	치유사업부장	심○○	16.03.30	기술서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구○○	13.01.10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심사○)
	상임이사	황○○	15.08.30	서기관	

- 지방자치단체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지방공기업(간접)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 다수여서 심사 없이 취업 가능

※ **취업심사대상기관(121개)** : 지방공기업(간접) : 117개 / 출연기관 1개(경기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출자기관 3개(광주광역시체육회, 인천종합에너지(주), 홍천군체육회)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간접)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20.12월)】

계	지방공기업(간접)			출자·출연기관		
	소계	지방공사	지방공단	소계	출자기관	출연기관
944개	154개	67개	87개	790개	98개	692개
121개	117개	38개	79개	4개	3개	1개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의 민간·산하기관 등 재취업 경로>

- 이로 인해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퇴직자들이 산하기관 또는 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공정한 관리감독업무 지장을 초래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퇴직공직자들이 교통, 시설관리, 건설·건축, 소방, 의료, 문화, 복지 등의 분야에서 재취업하여 광범위하게 활동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재취업 심사대상 누락 현황】

구분	현행(취업심사대상자)	누락
취업심사 대상기관	▶ 시장형공기업(16개), 공직유관단체(205개) 등 인사혁신처 고시 대상 : 20,284개	▶ 공무원 : 출자·출연기관 이동 ▶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 자회사 및 협력 업체(물품·용역 공급, 공사도급 등) ▶ 재출자·재출연기관 임직원 : 상동

- **(방산분야) 방위사업청 군전역자 상당수가 직무관련 유관업체에 취업하여 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 계약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 이들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산(유관)업체에 해당

※ 방산(유관)업체 : (주)○○○코리아는 ○○(○○)탈레스를 통해 군수분야에 진출한 업체, (주)○○텍은 군사용 시뮬레이터/통합센서 제어플랫폼 개발업체, (주)○텍과 G○○는 ILS(종합군수지원) 전문업체 등

【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20.3월 개정)】

- ▶ 모든 방산업체
- ▶ 최근 3년 이내 200만불 이상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 특히, 군전역자가 직원 1~2명인 무역대리점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사실 확인자체가 불가하며, 대부분 로비스트로 활동

※ 군수품무역대리점 : 무기중개상 정○○이 설립한 (주)○산과 (주)○○○텍에 김○○(연합사부사령관), 강○○(해군준장)이 고문, 대표이사로 취업한 후 M○○사의 무역대리점 로비스트로 관여하여 지난 6년간 900억여원 한도액 계약 체결('16.8월 위원회 실태조사)

※ 군전역일 '11.1월~'11.9월에 해당하는 퇴직자 73명에 대하여 재취업 현황 확인 결과, 35명(48%)이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점 등에 취업('16.8월 위원회 실태조사)

【최근 5년간('11~'16.5월) 방사청 군전역자 현황('16년 권익위 실태조사)】

구분	소계 (명)	퇴직 당시 계급				
		준장 이상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이하
육군	166	5	25	53	67	16
해군	115	1	10	40	40	24
공군	95	1	13	37	32	12
해병	5	0	1	3	1	0
계	381	<u>7</u>	<u>49</u>	<u>133</u>	<u>140</u>	<u>52</u>

- 군전역자 상당수가 재취업하고 나서 **퇴직 전 소속부서에 직무관련업무로 출입**함에 따라 이해충돌 개연성 상존

※ 방사청출신 재취업 퇴직자 30명에 대한 최근 2년간 방문기록 확인결과, 퇴직 전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방문(○○○코리아 부사장(김○○), ○○탈레스 부장(우○○), (주)산○ 본부장(이○○), 한국○○○○○○ 차장(이○○), (주)○산 부장(조○○) 등 다수)

<방사청 군전역자('11.1.11~9.30) 중 재취업자 확인 현황('16년 권익위 실태조사)>

퇴직 전 정보					재취업 정보		취업심사 대상여부
팀	군별	계급	성명	전역일	취업업체	직급	
수출진흥과	육군	대령	김○○	2011.01.31	A	부사장	×
물자원가팀	육군	중령	함○○	2011.01.31	B	부장	○
방공무기사업팀	육군	중령	우○○	2011.01.31	C	선임부장	○
지원함사업팀	해군	소령	신○○	2011.01.31	D	부장	○
중고도유도무기 사업팀	공군	대령	박○○	2011.01.31	E		○
차기유도무기 사업팀	공군	중령	김○○	2011.01.31	F	수 석 연구원	○
통신장비계약팀	해군	대령	홍○○	2011.02.01	G	전문위원	○
지상유도무기 사업팀	육군	소령	강○○	2011.02.28	H	차장	○
총포탄약계약팀	육군	대령	손○○	2011-02-28	I		○
화생방사업팀	육군	대령	이○○	2011-02-28	J	본부장	○
기획조정팀	육군	중령	정○○	2011-02-28	K	팀장	○
조기경보통제기 사업팀	공군	대령	김○○	2011-02-28	L	상무	×
국내목록팀	공군	중령	김○○	2011-03-31	M	본부장	×
함정기술지원팀	해군	중령	박○○	2011-03-31	N	부장	○
화력전술통제 사업팀	육군	소령	김○○	2011-04-30	O	부장	○

퇴직 전 정보					재취업 정보		취업심사 대상여부
팀	군별	계급	성명	전역일	취업업체	직급	
지상장비원가팀	육군	소령	손○○	2011-04-30	P	차장	○
항공기원가팀	공군	중령	김○○	2011-04-30	Q	선임	○
장비규격팀	공군	대령	김○○	2011-04-30	R	사장	×
탐재장비사업팀	공군	중령	박○○	2011-04-30	S	부사장	×
잠수함사업팀	해군	중령	김○○	2011-04-30	T	부장	○
기획총괄부	육군	소령	장○○	2011-05-31	U	연구위원	×
방공무기사업팀	공군	소령	강○○	2011-05-31	V	수 석 연구원	○
해상전력팀	해군	중령	서○○	2011-05-31	W	상무	×
획득기반과	해군	중령	박○○	2011-06-30	X		○
기술기획팀	육군	중령	신○○	2011-06-30	Y	고문	×
전투기사업팀	공군	중령	오○○	2011-06-30	Z	차장	○
탄약사업팀	육군	소령	이○○	2011-07-31	AA	차장	○
정책연구관	해군	준장	강○○	2011-07-31	BB		○
탄약사업팀	해군	중령	조○○	2011-07-31	CC	부장	○
사업분석과	육군	중령	연○○	2011-07-31	DD	부장	○
획득기반과	해군	소령	장○○	2011-08-31	EE	이사	×
항공기계약팀	공군	대위	이○○	2011-08-31	FF	과장	○
지상지휘통제 체계사업팀	해병	중령	이○○	2011-08-31	GG	수 석 연구원	×
위성무인기 사업팀	육군	중령	안○○	2011-08-31	HH	상무	○
RAM분석팀	해군	소령	정○○	2011-09-30	II	대표	×

- **국외조달의 계약상대방이 국외 제조사나 국내·외 공급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그동안 무역대리점과 계약체결 지속**

※ 방사청은 최근 6년간('11.~'16.) 확정계약(경쟁입찰)으로 직접 95개 무역대리점과 972억원 상당의 국외 수리부속 계약을 체결('16.8월 위원회 실태조사)

- 이후 이러한 **관행적 업무행태에 따른 규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무역대리점 활용 규정을 '16년에 개정**한 것으로 의심

【국외 상업구매업무처리지침(제2016-3호)】

제110조(국외구매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무역대리점 활용) : 상업계약팀장은 **200만불 이상의 전력 운영사업을 국외 상업구매로 추진시 국외업체로부터 활용 요청이 있고 무역대리점의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계약관의 승인하에 국외업체의 무역대리점 활용을 수락**할 수 있다.

※ (사례) 최근 6년간('11.~'16.) 확정계약시 20억원 이상 계약한 업체 중 무역대리점인 '아○○스 네○○ 엔지니어링 유한회사(○○소재)'는 2014년 한해에 방사청과 65억원 상당의 단독계약을 체결('16.8월 위원회 실태조사)

- 무역대리점이 **계약담당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공급사를 소개**하는 등 **사전 접촉**에 따른 상호 유착의혹 발생

※ (사례) 대○○공은 이전에 대리하던 국외 공급사인 Phoe Heli Inc가 파산하자 방사청과 계약실적이 전혀 없는 Heli Inc와 이전에 확정계약(경쟁입찰)으로만 납품하던 A○○ COMPANY를 소개하기 위해 계약담당자를 접촉한 후 총 3회(4.23, 5.14, 5.28)에 걸쳐 한도액계약 체결('16.8월 위원회 실태조사)

- 특정 무역대리점이 방사청 조달원으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주실적이 급증**하는 등 **계약담당자와의 유착** 개연성 상존

※ (사례1) AT GLO (주)는 2012.2.17. 조달원 등록 이후 확정계약(경쟁입찰)을 통해 매년 1억여원 정도 수주하다 '14년 3억7천만원으로 수주 급증('16.8월 위원회 실태조사)

※ (사례2) AT GLO (주)는 지난 2년간('14~'15) 한도액계약(수의계약)만으로 192억여원 수주('16.8월 위원회 실태조사)

IV. 개선방안

1. 공공기관 2급 이상으로 취업심사 직원 대상범위 확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시장형공기업 2급 이상 직원을 포함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반영된 취업제한 대상자는 제외

※ (예시) 시장형공기업(총 8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장형공기업(5개) :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등

☞ (참고)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15.7월 국민권익위 '철도건설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9호에 '2급 이상 직원'을 취업심사대상 반영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 취업할 수 있다.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공기업
8.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참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 ③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④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 ⑥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 ⑦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 「공공기관운영법」상 **준시장형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2급 이상 직원 포함**
 -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의 2급 이상 직원 포함**
 -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자·출연기관의 2급 이상 직원 포함**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제4항 및 제31조(취업심사 대상자의 범위) 제1항 개정

【조문 예시 :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13. 생략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2급 이상 직원

15.~16. 생략

17. 삭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삭제(「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삭제(「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0. 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의 2급 이상 직원(다만,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공기관은 제외)

2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2급 이상 직원(다만,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지방공기업은 제외)

2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2급 이상 직원

2. 퇴직공직자 재취업시 취업심사 대상기관 범위 확대

【영리분야】

- 공공기관 등과 **각종 설계용역, 물품공급 및 공사도급 등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 (예시) 취업심사 신규지정 범위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와 각종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리업체

※ 공기업,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의 협력업체 재취업 제한

【참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

- ①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 제2의2호 신설

【비영리분야】

- 퇴직공직자가 산하·하위기관으로 취업함으로써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급기관의 관리·감독기능 저해요인 등을 방지할 필요**

- 현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자회사**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 취업심사대상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자회사 등의 재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항 제8의2호 신설

【조문 예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의2. (신설)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 중 법 제3조의2의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와 각종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기업체
- 3.~6. 생략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공기업
8. 안전 감독업무, 인·허가 규제업무 또는 조달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8의2. (신설) 법 제3조의2의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의 자회사

【방산분야】

- 방위사업청에 조달원으로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모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 '16.10월 기준, 국외조달원 등록업체 현황 : 2,493개(국외소재 1,641개, 국내소재 852개) 중 **취업심사대상기관 비율은 53개(방산업체 포함)로 2.1%에 불과**

【(참고) 2020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발췌(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6.4)】

구 분		지정기준	대상기관
특정분야 (2,744개) ※ '20.6.4. 추가고시	합작법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방산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산업체 및 최근 3년간 중개수수료 신고(무역거래 건당 200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53개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관련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8개
	초·중등 사립학교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2,543개

- 군수품무역대리점의 **최근 3년간 중개수수료 신고**(무역거래 건당 200만불 이상) **실적요건 삭제 또는 완화**할 필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5항 제1호 나목 개정

【조문 예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 ⑤ [법 제17조 제1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3. 전 소속기관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강화

- 퇴직공직자들의 前 소속기관 대상 로비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도입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2~제4호 기관 등의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전 소속기관의 각종 물품·용역·공사 및 심의·자문 관련 출입을 제한

【참고】「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참고】국가철도공단 행동강령 제53조(퇴직직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①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제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퇴직 당시 2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9.28.>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행동강령을 위반하게 하는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공단 출입금지, 소속회사 등에 통보, 행위사실에 대한 공단내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퇴직예정인 부장 이상 직원은 퇴직 후 공단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2~제4호 기관 등의 「행동강령」에 '2급 이상 퇴직 임직원의 전 소속기관 출입제한 등'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 행동강령 제00조(퇴직 임직원의 전 소속기관 출입제한 등)】

- ①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취업제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퇴직 당시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각종 물품·용역·공사 및 심의·자문 관련하여 전 소속기관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행동강령을 위반하게 하는 퇴직 임직원에 대하여는 5년 이내 공단 출입금지, 소속회사 등에 통보, 행위사실에 대한 공단내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생략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2~제4호 기관 등은 **2급 이상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관리 의무화**

【참고】 **퇴직공직자의 고용(취업) 판단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4항

-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2~제4호 기관 등의 「**행동강령**」에 '**2급 이상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관리 및 퇴직자 출입제한 위반사항 점검·확인**' 사항 신설

【조문 예시 : ○○○○○○ 행동강령 제0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
 2. 행동강령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상담
 3.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4.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조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별히 지시 받은 사항 처리
- 6. 2급 이상 퇴직 임직원의 각종 물품·용역·공사 등 협력업체 재취업 현황관리 및 1년 이내 퇴직자 출입제한 위반사항 점검·확인**
- ② ~ ④ 생략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2~제4호 기관 등과 계약·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업체는 **2급 이상 퇴직 임직원의 고용(취업) 확인서 제출 의무화**

※ (예시) 각종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도급을 받아서 수행하는 계약·협력업체에게 '**퇴직자 고용(취업) 확인서**' 제출의무를 계약조건에 부가

【참고】 '**퇴직공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징구**' 공공기관 운영사례('15. 12월 기준)

- ▶ 한국수력원자력(주)은 발주사업 입찰참여업체는 '2급 이상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 국가철도공단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업체(협력업체)에 대하여 '2급 이상 퇴직자 고용확인서' 제출 의무화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2~제4호 **기관 등**의 공사·용역·물품 구매 관련 해당 「계약특수조건」 개정

【참고】 국가철도공단 **‘청렴계약 특수조건’** (계약처-14702, '15.11.09)

○ 공단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업체는 공단과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공단에서 구축하여 운영 중인 사업관리시스템(CPMS)에 공단 퇴직자 고용정보를 입력

- 제2조(청렴계약 준수 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공단 제규정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붙임 4] 양식에 따른 공단 부장급이상 퇴직자의 고용확인서를 계약자용 사업관리시스템(CPMS)을 활용하여 공단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11.09.)

○ 취업제한 대상 퇴직자를 고용(취업)할 수 없는 협력업체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계약한 경우 제재근거 마련

※ (예시) 적발시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5점) 및 낙찰적격심사(△2점) 등 감점 부여,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등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2~제4호 **기관 등**의 공사·용역·물품 구매 관련 해당 「적격심사기준 및 PQ심사기준」 개정

【참고】 국가철도공단 **‘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계약처-14702, '15.11.09)

○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취업제한대상자의 고용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 제5조 제1항 제7호 및 [붙임14] 제출서류 목록표 기타 증명항목에 추가(별지 8호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확인서 항목 신설)

- 취업제한대상자를 숨긴 채 계약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적발 후 2년간 신인도분야 감점부여기준 마련

구분	평가요소	현행	개정	
			등급	평점
공사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	너. 취업제한대상자 고용	<신설>	A. 취업제한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업체가 이를 숨긴 채 계약을 한 경우(적발 후 2년)	-2.0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20) 취업제한대상자 고용	<신설>	J. 취업제한대상자를 고용할 수 없는 업체가 이를 숨긴 채 계약을 한 경우(적발 후 2년)	-5.0

붙임

최근 6년간('15.1월~'20.8월) 부처별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

부처	취업심사	취업가능	취업승인	취업가능·승인율	비고
국무총리비서실	9	9	0	100%	
국민경제자문회의	1	1	0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	1	0		
새만금개발청	5	4	1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1	1	0		
인사혁신처	10	8	2		
감사원	74	56	13	93.2%	
검찰청	169	148	11	94.1%	
관세청	146	74	58	90.4%	
국가정보원	53	47	5	98.1%	
기획재정부	29	18	10	96.6%	
산업통상자원부	78	54	18	92.3%	
외교부	55	48	2	90.9%	
경찰청	1,520	1,222	11	81.1%	
고용노동부	35	10	19	8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	21	14	89.7%	
교육부	38	28	3	81.6%	
국무조정실	17	12	2	82.4%	
국민권익위원회	25	16	5	84.0%	
국방부	536	438	38	88.8%	
금융위원회	24	13	8	87.5%	
농림축산식품부	53	43	2	84.9%	
미래창조과학부	32	22	5	84.4%	
법무부	67	55	4	88.1%	
보건복지부	40	31	4	87.5%	
여성가족부	5	4	0	80.0%	
원자력안전위원회	8	3	4	87.5%	
중소기업청	5	4	0	80.0%	
중소벤처기업부	6	1	4	83.3%	
특허청	5	2	2	80.0%	
해양경찰청	42	36	1	88.0%	
행정안전부	42	34	3	88.0%	
환경부	61	36	13	80.3%	
공정거래위원회	33	24	2	78.8%	
국가보훈처	9	6	1	77.8%	
국토교통부	113	63	18	71.7%	
문화체육관광부	23	12	6	78.3%	
방송통신위원회	10	5	2	70.0%	
방위사업청	31	20	4	77.4%	
산림청	12	8	1	75.0%	
소방청	13	8	2	76.9%	
식품의약품안전처	44	15	17	72.7%	
조달청	25	16	2	72.0%	
해양수산부	62	30	15	72.6%	
국가인권위원회	3	2	0	66.7%	
국민안전처	103	65	5	68.0%	
국세청	149	96	5	67.8%	
기상청	3	2	0	66.7%	
병무청	3	2	0	66.7%	
행정중심복합건설청	11	6	1	63.6%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전관특혜 관행 개선」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
준법감시제 도입**

2022. 11.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81
II. 일반현황	82
III. 문제점 분석	86
1. 개방형 감사 책임자의 내부직원 위주 임용행태 만연 ...	86
2. 조직내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약화 ...	91
3. 부패예방·내부통제를 위한 개방형 준법전담기구 미비 ·	95
IV. 개선방안	101
1. 【제안】 개방형 감사관 직위 제도의 도입 실효성 제고	101
2. 조직내부 각종 비위행위 관련 내부통제 장치 강화	103
3.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개방형 청렴·준법전담기구 도입	110
[붙임] 1.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및 벌칙 현황(예시 : 산자부)	
2. 개발업무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및 벌칙 현황	
3. 「토지보상법」 제4조의 개별 법률에 규정한 공익사업 현황	
4. 개별 법률상 ‘비밀유지’ 관련 근거규정 명시 현황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전·후 근거규정 비교	

I. 추진배경

- 그동안 전·현직 공직자들간에 형성된 **기득권 카르텔이 '관피아' 논란을 야기시키고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등 전관특혜 관행 여전**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91(실천과제) :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국가자격시험 관리 강화

- 이러한 **공직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전관특혜 관행이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 미비

- '10년 「공공감사법」 제정 이후 **개방형 감사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내부직원 위주의 임용 관행화로 공직내부의 각종 비위(혐의)자에 대한 온정적 감사행태 만연**

※ 공공기관 조직내부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감사기구의 책임자에 최근 5년간 ('14~'18.3월) **18개 정부부처 중 11개 부처가 내부인사 채용**

- 이로 인해 입찰·계약, 채용, 개발계획 등 **내부 미공개정보의 사전 유출 사실이 신고되더라도 수사의뢰 되지 않고 자체감사로 종결**
- 특히, 쏠 공공기관에 청렴·부패방지업무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으나 **공직내부에 부패예방·통제**를 위한 **개방형 청렴·준법전담 기구 부재**

※ **준법감시인(관) 설치 공공기관 현황**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광물자원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따라서 **공직사회 공정문화 정착의 '걸림돌'인 기득권 카르텔과 그로 인한 전관특혜를 타파하고자** 관계기관, 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필요**

Ⅱ. 일반현황

가. '감사기구의 장' 관련 법적근거

- **【근거】** 「공공감사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

【참고】 「공공감사법」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 **【임기】**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장

※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자격】**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공공감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규정

【참고】 「공공감사법」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1항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상응하는 경력자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자
4. 공공기관 또는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나. 비위행위 감시를 위한 준법통제 기구

【준법감시인】

- **【정의】** 경영진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위반사실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

※ 근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참고】 준법감시인제도

- ▶ '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취약성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제도 도입(2000년 10월)
 - 주로 증권사나 투신사 등에서 직원들이 자산관리, 위험관리, 고객관리 등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직원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 ▶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부터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준법감시인 설치를 의무화, 신용금고는 2001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이후 일정규모 이상, 상장회사에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상법 제542조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개정('12.4월 시행)

【금융회사 유형별 준법감시인 선임기준】

회사 유형	인원	선임대상
금융회사 일반	1명 이상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상호저축은행(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직원 중 선임 가능
금융투자업자(자산총액 5조원 미만)		
보험회사(자산총액 5조원 미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총액 5조원 미만)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	예외	예외
투자일임 재산 합계액 5천억원 미만의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 **【선임절차】** 이사회 의결로 선임(임기 2년 이상)

※ 해임시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자격요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모두 충족

【참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1항 제2호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준법지원인】

- **【정의】** 상장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업무 담당

※ 근거 : 상법 제542조의 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참고】 준법지원인제도

- ▶ '12. 4월 기업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
- * '11년 4월 상법개정('12.4월 시행)으로 이사회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이사회의 감독권한을 조기에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준법지원인·준법통제기준 제도 도입
- ▶ '12. 4월부터 '13년 12월 말까지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14. 1월부터는 5,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확대

- **【선임대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1명 이상 선임 의무)
- **【선임절차】** 이사회 결의로 임면(임기 3년 상근직)
- **【자격요건】** 「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및 시행령 제41조에 명시

※ 변호사, 대학 등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상장회사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다. 비위행위자(금품·향응, 성범죄, 채용비리 등)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 공공기관 등의 임원에 대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사실 또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나 감사 의뢰하도록 명문화

※ 근거 :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2

【관계법률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현황】

구 분	근거규정
공공기관 운영법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지방 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출자 출연법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출자·출연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III. 문제점 분석

1. 개방형 감사 책임자의 내부직원 위주 임용행태 만연

- 2010년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이 도입된 이후 12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내부직원 위주의 임용 관행화

※ '19년말 기준, 33개 부처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임용 확인결과 : 내부직원 14개 부처, 타부처 직원 15개 부처, 민간인 1개 부처, 3개 부처는 채용 진행 중 ('20.10월 국감자료)

【참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 내부직원을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할 경우 조직 내부의 비리 제보·신고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존

【개방형 직위 감사기구의 장 및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 비교('19년말 기준)】

구 분	개방형 직위 감사기구의 장		개방형 직위(고공단·과장급)	
직위 지정수	33개	-	458개	-
총원계	30개	100%	390개	100%
자부처	14개	46.7%	163개	41.8
타부처	15개	50.0%	29개	7.4
민간인	1개	3.3%	198개	50.8
현직자	-	-	31개	-
채용 진행 중	3개	-	37개	-

※ 해양수산부는 '13. 7월부터 현재까지 개방형 감사관 직위를 내부인사로 임용

【해양수산부의 개방형 감사관 내부직원 임용 사례】

구 분	장○○	한○○	류○○	임○○	이○○
재직기간	'13.07월~'14.11월	'15.03월~'17.02월	'17.02월~'19.02월	'19.03월~'20.02월	'20.03월~현재
비 고 (前 보직)	여수지방 해양항만청장	감사담당관	국제협력총괄과장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	해운정책과장

- 이로 인해 부처 내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행위(성희롱, 금품, 채용 등) 관련 투서·신고 등을 처리할 때 조직보호 논리가 우선 적용

※ (사례1) 지난 5년간 해양수산부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86.5% 경징계(감봉·견책) 조치, (특히 '15년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은 감봉 1개월, '16년 성희롱 비위 공무원은 구두경고로 종결)

【지난 5년간('13~'17) 해양수산부의 비위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비위건수	7	41	36	18	17	119
중 징 계	1 (14.3%)	6 (15%)	7 (20%)	0 (-)	2 (12%)	16 (13.5%)
경 징 계	6 (85.7%)	35 (85%)	29 (80%)	18 (100%)	15 (88%)	103 (86.5%)

※ (사례2) 갑질 등 각종 비위행위(혐의)자 조치결과

- ▶ 서울시 :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원인(서울시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17년~'21.4월까지 총 징계건수 290건 중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40건, '17년 6%인 것이 '미투운동' 이후 '18년 18%로 증가)
- ▶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A씨는 '당시 박물관장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
- ▶ 전남 여수시는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갑질을 한 팀장에게 징계 대신 서면경고로 무마
- ▶ 울산시 북구 가족정책과 고위공무원의 성희롱사건 조사에 대해 조사를 요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를 받자 공무원노조 등이 "재심의를 해야 한다"며 반발. 심의위원 5명 중 내부공무원이 3명이 참여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나 외부 전문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줄 것을 요구('19. 6월)

- 공직 내 상사의 폭언·폭행 및 성희롱·성추행 등 신고사건의 경우 조사단계에 내부인사 참여를 배제 하자는 여론도 존재

※ '20년 4월 네이버인 링크 기준, '갑질' 관련기사 총173건 중 77건(44.5%)이 공직사회 갑질이슈임

【'20. 4월 네이버인 링크 공직사회 '갑질' 이슈(77건) 관련 세부사항】

구 분	계	경찰	공기업	지자체 및 중앙부처	군부대
건 수	77건	41건	16건	11건	9건
비율(%)	100%	53.2%	20.8%	14.3%	11.7건

- 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상급기관·감사원 출신, 내부직원을 감사 책임자로 다수 임용

【17개 특별·광역시·도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직위 임용 사례('21.6월 기준)】

구 분	명 칭	책임자	임용 전 소속	비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	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감사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장	류○○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외부
대구광역시	감사관	하○○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파견	내부
인천광역시	감사관	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내부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	이○○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2과장	감사원
대전광역시	감사위원장	이○○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장	내부
울산광역시	감사관	남○○	감사원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감사원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국장	내부
경기도	감사관	김○○	서울지검 북부지청검사, 변호사	외부
강원도	감사위원장	어○○	강원도의회 의정관	내부
충청북도	감사관	임○○	행정안전부 기술감사팀장	감독부처
충청남도	감사위원장	김○○	행정안전부 감사관, 한화그룹 감사총괄임원	감독부처
전라북도	감사관	김○○	감사원 국방감사단 제2과 수석감사관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관	김○○	감사원 감사품질지원관	감사원
경상북도	감사관	정○○	경상북도 영덕군 부군수	내부
경상남도	감사위원장	임○○	감사원 과장	감사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의회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성비위 징계현황 확인결과, 대부분 경징계 처분. 특히, 경징계 처분율이 70% 이상인 지자체는 경남 85%, 부산 81%, 대전·대구 73% 순)

【최근 5년간('15~'19) 지방자치단체별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단위 명, %)]

구분	계	중징계					경징계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소계	감봉	견책
서울	78	38(49%)	2	6	11	19	40(51%)	24	16
부산	21	4(19%)	1	2	0	1	17(81%)	7	10
대구	15	4(27%)	0	0	2	2	11(73%)	2	9
인천	27	16(59%)	0	3	1	12	11(41%)	8	3
광주	4	3(75%)	0	0	1	2	1(25%)	0	1
대전	11	3(27%)	0	2	0	1	8(73%)	3	5
울산	10	5(50%)	2	0	0	3	5(50%)	2	3
세종	5	3(60%)	1	0	2	0	2(40%)	0	2
경기	97	59(61%)	2	10	14	33	38(39%)	13	25
강원	23	12(52%)	2	1	1	8	11(48%)	6	5
충북	28	10(36%)	2	1	2	5	18(64%)	8	10
충남	21	12(57%)	1	5	0	6	9(43%)	5	4
전북	24	8(33%)	1	3	0	4	16(67%)	7	9
전남	38	13(34%)	1	4	0	8	25(66%)	9	16
경북	30	11(37%)	2	2	1	6	19(63%)	2	17
경남	26	4(15%)	0	2	0	2	22(85%)	8	14
제주	5	2(40%)	0	0	0	2	3(60%)	2	1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3회 연속 감사원 과장(현직)이 연이어 임용**되고 있어, 외부로부터 **감사원의 파견 직위로 오해할** 소지 발생

※ 서울시 감사위원장에 감사원 현직자가 연속하여 임용됨으로써 **감사원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중요 감사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 상황 우려**

【서울특별시의 개방형 감사위원장 ‘감사원 출신’ 임용 사례】

구 분	김○○	최○○	이○○
재직기간	2015 ~ 2016	2017 ~ 2018	2019 ~ 현재
(前 전속기관 보직)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감사원 복귀(당시)	공직감찰본부장	적극행정지원단장	-

- 이 외에도 개방형 감사관(감사담당관) 직위를 **부처간 또는 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직위처럼 교차 임용**할 수 있어 **내부통제기능 상실** 우려

※ (예시) A부처 4급 → B부처 감사담당관, B부처 감사담당관 → A부처 4급

2. 조직 내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약화

가. 조직 내부의 미공개정보 비위행위 관련 부적정 감사조치 우려

-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 직원들에 의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또는 누설 관련 비위행위 등이 빈발하는 상황

※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또는 누설 사례

- ▶ **한국가스공사** 구매담당직원이 '1인용 사택구매정보를 알고, 배우자에게 아파트 2채를 미리 사도록 지시한 후 한국가스공사와 배우자간 매매계약 체결 외 다수 비위행위 적발 되었으나 업무배제하는 선에서 종결('21. 4월)
-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입건('21. 4월)
- ▶ **한국전력기술** 직원이 130억원대 원자력발전소 공사입찰정보를 사전에 특정업체에 제공, 계약을 따내게 한 후 해당업체로 이직('20.11월)
- ▶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이 내부 입찰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후 해당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료 적발('19.10월)
- ▶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마케팅팀장이 공단분양 컨설팅용역업체에 입찰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후 낙찰대가로 금품수수('15.10월)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대상 및 벌칙' 근거규정 유무 현황】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한국전력기술 [상법 제317조]	×	×
한국수력원자력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법률]	×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법 제45조의9]	×	×

○ 특히, 직원들에 의한 미공개정보 비밀유지 위반 등 비위행위로 사익추구 사실이 적발되어도 ‘벌칙 적용’을 위한 법적근거 또는 내부업무절차 부재

- 이로 인해 입찰·계약, 채용, 개발계획 등 미공개 내부정보 유출 사실이 신고되더라도 수사의뢰 되지 않고, 자체감사로 종결

▶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감사결과, 당시 4급 A직원이 6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부동산 개발정보 유출사실을 적발하고 자체 종결('21. 3월 보도자료)

※ 국가철도공단은 '16년 자체혁신방안을 통해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

※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해당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의뢰 하도록 규정

【관계법률상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비교】

구 분	근거규정
공공기관 운영법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지 방 공 기 업 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 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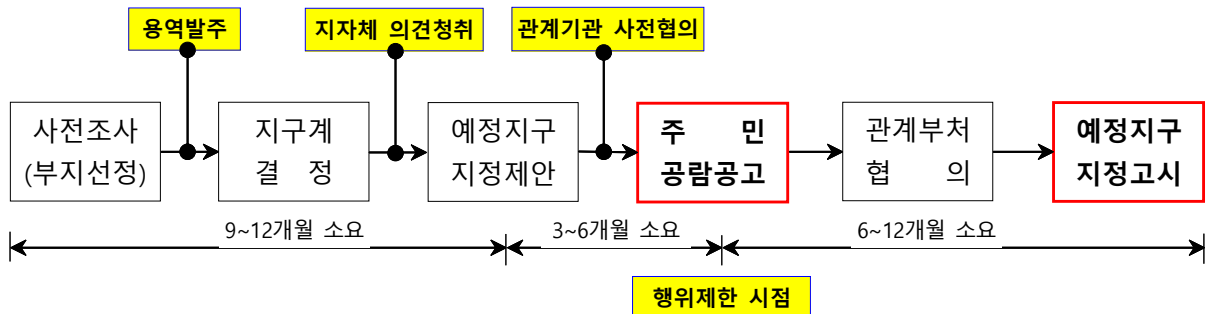
나. 부동산 개발 심의·자문 및 협의 대상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 상존

- 미공개 개발사업 정보가 대외에 공개되기 전 여러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과정 등에서 업무담당자 등에 의해 유출 불가피

※ 사전 개발정보 접근권자

- ▶ 「토지보상법」 제4조의 별표에 규정한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111개) 관련 **사전협의 관계기관 및 자문·심의 참여 관계자**

【(예시)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미공개 개발정보 유출 메커니즘】



- ▶ 택지예정지구 지정 전, 미공개 개발정보가 **사전조사시부터 주민 공람공고일까지 최대 1년 6개월 정도 소요**

대외비로 관리(미공개 개발정보)	대외 공개
【정보 접근권자】 ▶ 지방자치단체 사전 의견청취 업무담당자(지구제안 전) ▶ 자문·심의·협의기관 등 업무관계자(지구제안 후) ▶ 측량·도시계획 등 용역업체 담당자(지구계 결정 전)	
【공직자의 투기행태】 ▶ 공공시행자, 지자체 협의담당자, 지방의원 등이 직접 정보이용 및 제3자(기획부동산, 토지브로커 등) 정보 제공 ▶ 본인, 가족, 지인 및 농업법인 설립 등을 통해 토지 매입	【투기세력의 보상금 노린 편법행위】 ▶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등 ▶ 매매계약서 날짜 조작 ▶ 묘목식재, 비닐하우스 설치 등

- 각종 개발사업은 대외공개 전, 내부정보 유출 우려로 **사전조사시 개발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할 필요

- ※ 현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임의규정**)

- ▶ 광주광역시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도면 등 개발정보가 사전에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유출되어 28만평의 택지개발사업 철회('07. 1월)
- ▶ '20. 6월 한국주택토지공사(LH)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4급 직원이 6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자사 부동산 개발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 유출정보 일부는 실제 제3자(법인)가 투자 활동한 사실도 확인('21. 3월)

○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인 **지방의원, 전문위원** 등은 사전 개발정보 접근이 가능하나 **비밀유지의무 근거규정 부재**

<(참고) 국토계획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의원) 현재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및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회의의 비공개 규정한 명시되어 있을 뿐 **심의·자문 등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은 부재**

- ▶ 대전시 A의원은 '20. 2월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유성구 성북동 발 402m²를 1억2천만원에 매입, B의원은 현도산업단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현도면 중삼리 논 1천617m²를 1억8,800만원에 매입
- ▶ 세종시 C의원은 국가스마트산업단지 인근 연서면 와촌리 야산 2만6,182m², D의원은 부강역~북대전나들목 연결도로 건설예정지인 부강면 금호·부강리 논·밭 6천718m²를 매입
- ▶ 인천 계양구 구의원 D씨와 그의 가족이 계양테크노벨리 인근 6억7천만원 상당의 토지 4필지 매입, 아산시의회 E의원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 타인에게 토지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압수수색

※ (민간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한 심의·자문내용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부재**

- ▶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경남도 의원은 “산단 개발과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부동산거래와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과 민간인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언급하며 보도자료 배포('21. 3월)

3. 부패예방·내부통제를 위한 개방형 준법전담기구 미비

가. 공공기관의 준법통제·감시기구 미운영 또는 운영방식 제각각

- 현재,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를 운영 중인 일부 공공기관은 대체로 사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

※ 다만,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각 중앙회는 준법감시인,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른 공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함

- 반면 대다수 공공기관은 부패예방 및 내부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운영과 관련 법적 의무근거가 없어 미운영 중인 상태

【(예시) 공공기관 준법감시인·준법지원인 운영 근거규정 현황】

기관명	근거규정	비고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내규
기술보증기금	준법지원업무 운영기준	내규
국가철도공단	준법감시인 운영에 관한 지침	내규
한국무역보험공사	준법감시요강	내규
(주)강원랜드	준법통제규정 / 「상법」 제542조의13	법령
한국광해광업공단	준법경영규정	내규
중소기업은행	준법지원규정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등	내규/법령
한국산업은행	집행부행장 및 준법감시인 운용규정	내규/법령
한국수출입은행	준법감시인 운영세칙	내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3 및 시행령 제40조의2	법령

- 관계법상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 공기업 중 상당수가 선임하지 않거나 일원화된 임명·운영방식 부재

※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대상 공기업 중 (주)강원랜드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은 준법지원인 선임의무 미준수('21.12월 언론보도)

※ 한국광해광업공단('21.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출범)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 공개채용으로 임명, 국가철도공단은 외부 위촉과 내부직원으로 구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사 직원을 제외한 외부 공개모집으로 임명**

- 일부 기관의 경우 준법감시기구가 감사실과 독립적으로 분리·운영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외부 위촉인사는 비상근으로 운영함에 따라 내부통제 부실화 우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제상 준법감시관실을 두고 감사실과 별도 분리하여 운영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도(감사실과 준법감시관 분리 운영)】



○ 공공기관 중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일부 기관에 대한 임직원 품위유지,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 내부통제 효과는 일부 확인

※ **준법감시인 설치** : '16. 9월 이후 한국광물자원공사(행동강령 위반사항 없음), 국가철도공단(품위·성실의무 위반 21명, 행동강령 위반 5명)

※ **준법감시인 미설치** : '16. 9월 이후 한국가스공사(품위·성실의무 위반 77명, 행동강령 위반 20명), 한국토지주택공사(품위·성실의무 위반 18명, 행동강령 위반 57명)

※ **준법감시인 미설치 기관의 경우 중징계 비율이 각각 30.7%, 38.5%에 불과**

【최근 5년간('16.9월~'21.3월) 공공기관별 징계처분 현황(단위 명, %)]

기관명	고발 여부	계	중징계					경징계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소계	감봉	견책
한국가스공사	5	166 (100%)	51 (30.7%)	11	11	0	29	115 (69.3%)	41	74
▶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 위반	1	77	36	9	10	-	17	41	15	26
▶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수수 등)	2	20	4	1	-	-	3	16	4	12
▶ 기타	2	69	11	1	1	-	9	58	22	36
한국토지주택공사	4	143 (100%)	55 (38.5%)	21	8	7	19	88 (61.5%)	22	66
▶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 위반	-	18	13	2	3	3	5	5	3	2
▶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수수 등)	3	57	36	19	4	2	11	21	10	11
▶ 기타	1	68	6	-	1	2	3	62	9	53
한국광물자원공사	0	2 (100%)	1 (50%)	0	0	0	1	1 (50%)	1	0
▶ 기타(근신 2명)	-									
국가철도공단	0	27 (100%)	17 (63%)	9	1	0	7	10 (37%)	5	5
▶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 위반	-	21	15	9	1	-	5	6	4	2
▶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수수 등)	-	5	2	-	-	-	2	3	1	2
▶ 기타	-	1	-	-	-	-	-	1	-	1

☞ 준법감시인 설치기관 : 한국광물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나. 공직사회의 '한지붕 두살림(사후감사·부패예방)' 업무행태 지속

- 청렴·부패방지업무가 쏠 공공기관에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감사기구내 부속업무로서 임직원들의 부패예방·내부통제 업무를 수행**

※ 공직자에 대한 부패예방·내부통제 관계법률 제정 현황

- ▶ 「부패방지법」 2001. 7.24 제정
-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2003. 2.18 제정
- ▶ 「공익신고자보호법」 2011. 3.29 제정
- ▶ 「청탁금지법」 2015. 3.27 제정
- ▶ 「공공재정환수법」 2019. 4.16 제정
- ▶ 「이해충돌방지법」 2021. 5.18 제정

- **감사기구의 본연의 역할**은 소속기관이 속한 업무·활동에 대한 **사후적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활동** 등이 주된 업무

※ **자체감사** :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함(「공공감사법」 제2조)

【참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청렴·윤리 등과 관련된 사전예방적 준법통제 기능이 사후적 감사기능보다 중요함에도 독립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는 실정

※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아래 전체 감사실 직원 중 일부 내부직원이 **청렴·윤리** 및 **준법(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

【(예시) 공공기관 감사실의 주요 업무(홈페이지에서 발췌)】

A 공공기관	B 공공기관
감사실 부서명 감사총괄 일상감사 조사 성과재무감사 청렴감사 종합감사1 종합감사2 필리핀현지법인감사	담당업무 감사 감사 감사 내부통제 내부통제
C 공공기관	D 공공기관
	감사Manager [감사2부 업무 총괄] 감사Senior [내부감사] 감사Senior [내부감사] 감사Senior [내부감사] 감사Senior [청렴 및 내부감사] 감사Senior 감사Senior [청렴 및 내부감사]

【(참고) 공공감사기구 및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차이점 비교】

구분	공공감사기구	청렴·준법감시기구
근거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 「부패방지권익위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공무원행동강령」 ▶ 「청탁금지법」 ▶ 「공공재정환수법」
활동 주체	▶ 감사기구의 장(개방형 직위) 및 자체감사기구	▶ 감사기구내 내부직원 일부가 담당
성격	▶ 사후적 감사기능	▶ 사전예방적 내부통제·감시기능
역할	▶ 공공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 ▶ 회계검사활동 및 직무감찰활동	▶ 청렴·준법 감시업무 담당자가 조직내부 공직자의 재량권한 일탈행위의 예방을 위한 감시와 공공·행정서비스의 공정하고 투명한 제공을 확인하고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행위 ▶ 준법감시프로그램(CP) 도입/운영, 반부패 시책수립, 청렴도평가관리 등
주요 업무	【자체감사 및 그에 따른 처분요구】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2. 특정감사 : 특정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 마련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 4. 성과감사 : 특정정책·사업·조직 등에 대한 경제성·효과성 분석 및 평가 5. 복무감사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실시 ①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② 위법·부당한 민원처리 ③ 부정·부패 등 비위사실에 관한 사항 ④ 직무감찰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⑤ 취약시기·취약분야 복무기강 확립 ▶ 상급기관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그 밖에 관계법령, 「정관」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청렴준법감시업무에 따른 소관사항】 1.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규칙·사규 등의 재량권 일탈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 프로그램(CP) 제정·개정 2. 청렴준법감시 정책(방침)의 수립 3. 준법감시프로그램(CP) 운영/관리 4. 준법감시프로그램(CP)의 준수여부 점검·모니터링 및 조사 5. 청렴준법감시 관련 임직원 교육 6. 임직원의 행동(윤리)강령 및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정의 제정/운영 7. 부패방지시책의 수립·시행 및 청렴도 향상 8.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 운영 ▶ 상급기관 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조직내부 구성원간의 갑질·성비위행위 신고센터 운영 - 시민청렴옴부즈만 운영(신고접수·상담) - 외부인사 참여형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 국민·민원인 또는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참고	-	▶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

IV. 개선방안

1. 【제안】 개방형 감사관 직위 제도의 도입 실효성 제고

- 현행 「공공감사법」의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제도 취지에 맞도록 모든 공공기관은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 채용시 **내부직원 지원을 제한**

※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준법감시관 임명을 위한 자격요건**’의 경우 **공사 내부 직원의 지원자격을 제한**

【참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0조의2(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 ① [법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관련 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② ~ ⑤ 생략

⇒ 「공공감사법」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1항에 ‘**소속기관 내부직원의 지원자격 제한**’ 단서조항 신설

【조문 예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 임용권자는 소속기관 내부직원의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 6. 생략

○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부처 또는 특정기관 출신이 2회 이상 연이어 임용될 수 없도록** 근거 조항 신설

- 다만, 「공공감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최초 임용자를** 총 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연장은 가능**

⇒ 「공공감사법」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임용시 특정기관 출신의 2회 이상 연속 임용 제한**’ 조항 신설

○ 또한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부처간 또는 기관간의 상호 교차 임용을 금지**(상호 ‘봐주기’ 감사행태 제한)

⇒ 「공공감사법」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임용시 2개 부처 또는 기관간 교차 임용 제한**’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재임용할 때에, **이전 임용자의 소속기관 출신자를 2회 이상 연이어서 임용하거나 두 기관 출신자간의 상호 교차 임용을 제한한다.**

2. 조직 내부 각종 비위행위 관련 내부통제 장치 강화

가. 전·현직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범위 확대

○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근거규정 도입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대상 및 미공개정보 주요내용

- ▶ 대상 : 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상 **임원 및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②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상 **기관에 둔 각종 위원회(설계·용역 등)에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민간위원**
- ▶ 내용 :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내부정보(각종 입찰·계약, 채용 및 개발계획 관련도서, 설계 등의 자문·심의내용 등)을 사전에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제4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4조의 다음 각 호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민간위원**

⇒ 「지방공기업법」 제61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제61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4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지방공사에 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민간위원**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제4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출자출연기관에 둔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민간위원**

○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토지이용계획·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근거규정 도입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위촉직)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25~30인 이하)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당연직)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 (위촉직) **지방의원, 관련분야**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17~30명 이하)

⇒ 「국토계획법」 제113조의5(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제113조의5(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① 법 제106조, 제113조의 각 호에 의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자문에 응한 사항에 관여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데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의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의무화 도입

- 미공개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위반한 전·현직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의뢰 의무화' 근거규정 신설

⇒ 「공공기관운영법」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개정

【조문 예시 : 법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미공개정보 사익추구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거나 자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조문 예시 : 시행령 제29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 ① 법 제52조의3 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미공개정보 사익추구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행위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 개정

【조문 예시 : 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사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미공개정보 사익추구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거나 자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 해당 공사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조문 예시 : 시행령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 ① 법 제63조의7 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미공개정보 사익추구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행위

⇒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

【조문 예시 : 법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사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의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미공개정보 사익추구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거나 자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 해당 공사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조문 예시 : 시행령 제10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 ① 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미공개정보 사익추구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행위**

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공공기관운영법」 제57조(벌칙)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제57조(벌칙)】

법 제4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81조(벌칙) 제2항 신설

【조문 예시 : 제81조(벌칙)】

- ② 법 제61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출자출연법」 제38조(벌칙)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제38조(벌칙)】

법 제4조의2(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 전문위원 등의 **토지이용 계획·개발**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 「국토계획법」 제140조(벌칙) 제3호 신설

【조문 예시 :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3조의5(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라. 공공개발사업 추진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신설

- 모든 개발사업 추진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근거 규정 명문화 (붙임 4 참조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미명시 법률 63개**)

※ 현재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또는 조치 근거규정을 명시한 법률(13개)

- ▶ 공공주택특별법(제9조), 도시개발법(제10조의2), 공공토지비축법(제28조), 기업도시법(제42조), 도시공업지역법(제26조), 해안내륙발전법(제33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연구개발특구법(제45조), 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47조), 지역개발지원법(제74조), 친수구역법(제39조), 향만법(제92조), 향만재개발법(제41조)

⇒ 「토지보상법」 제4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조항 신설 및 공익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보안관리업무처리규정」 제정 또는 개정

【조문 예시 : 제4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 ① 법 제4조 제8호의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전까지는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의 요청·제안을 위한 조사, 관계서류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자문과정에서 관련 **미공개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생산·보고계통 및 심의·자문·협의 관련 정보접근자의 열람사실 등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정권자
 2. 법 제4조 제8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자
 3. 법 제4조 제8호의 개별 법률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심의·자문위원회
 4.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4조의 제8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이나 지정의 요청·제안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하거나 관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미공개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법 제4조 제8호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권자는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익적 개발사업 관련 **미공개정보 접근자의 위반행위 신고 또는 자체감사 결과 혐의자에 대한 ‘수사의뢰 의무화’** 도입

⇒ 「토지보상법」 제4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법 제4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 제4조 제8호의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시행자는 제4조의 2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 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 개별 법률에 근거한 공익적 개발사업 추진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위반자의 벌칙 근거규정 도입

※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제57조) 및 도시개발법(제79조의2)에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벌칙규정 존재

⇒ 「토지보상법」 제93조의3(벌칙) 조항 신설

【조문 예시 : 제93조의3(벌칙)】

- ① 제4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개방형 청렴·준법감시인제도 도입

-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 한해 설치·운영 중인 **준법감시인제도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 **준법감시인 설치 공공기관 현황**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광물자원공사, (주)강원랜드,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국가철도공단 등

【참고】 준법감시인 설치 공공기관의 법적근거 현황

기관명	근거규정
한국산업은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 사목 / 「집행부행장 및 준법감시인 운용규정」
중소기업은행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 사목 / 「집행간부 및 준법감시인 운용규정」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내부규정 / 준법감시인
기술보증기금	「준법지원업무 운영기준」 내부규정 / 준법감시인
국가철도공단	「준법감시인 운영에 관한 지침」 내부규정 / 준법감시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준법감시요강」 내부규정 / 준법감시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준법통제규정」 내부규정 / 준법감시인
한국수출입은행	「준법감시세칙」 내부규정 / 준법감시인
(주)강원랜드	「상법」 제542조의13 / 「준법통제규정」 내부규정 / 준법지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3(준법감시관) / 준법감시관

-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 및 청렴준법감시관(개방형 직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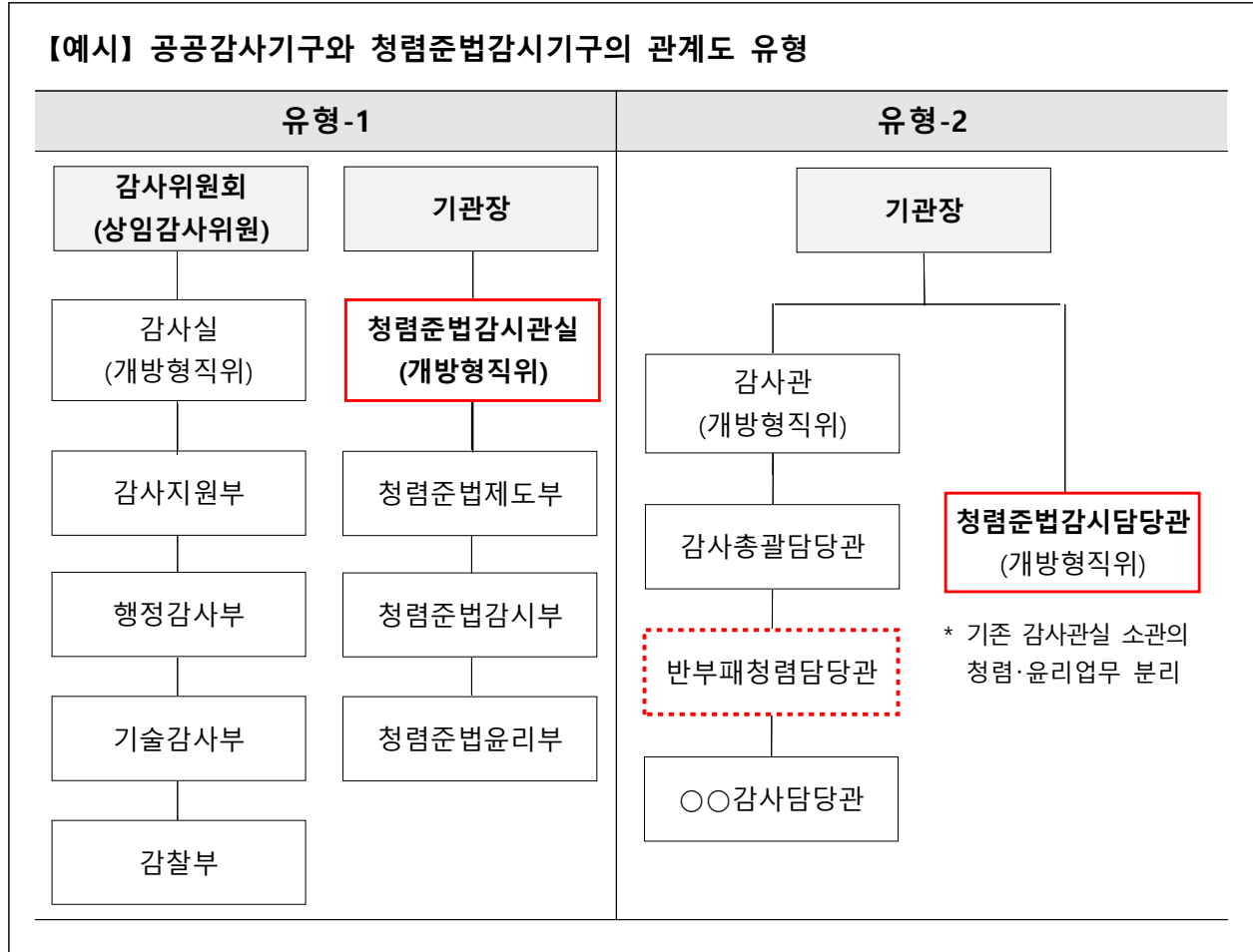
※ (예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규모 및 업무성격·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청렴준법감시관 지위 및 내부통제기준(「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참조) 마련** 필요

- ⇒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내부통제기준 및 청렴준법감시관 임면 등’** 조항 신설, 각 공공기관 등에 「청렴준법감시 운영규정」 제·개정

【예시】 청렴준법감시관의 임면 등에 대한 기본적 사항

- ▶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임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직원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은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단, 내부직원의 지원은 금지)
- ▶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임기** : 총 임용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2년 이상 보장(단, 계약종료 후 최초 임용자를 재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임용자의 소속기관 출신자를 연이어서 임용하거나 두 기관간 출신자를 상호 교차 임용은 제한)
- ▶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 당사자의 의사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고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휴직의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감사법」 제15조 참조)
 4.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자격**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청렴·윤리,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2.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청렴·윤리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준법감시·청렴·윤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준법감시·청렴·윤리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
 6.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국정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
- ▶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임무 등** : 청렴준법감시제도(내부통제기준 제·개정, 법규준수정책 수립, 법규준수 프로그램 입안·관리) 관련지침 및 매뉴얼 사전 검토 외 다음 각 호의 사항 포함
 1.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
 2.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3. 임직원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 및 이해충돌방지 운영규정 제정·운영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시행 및 청렴도 제고
 5.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6. 조직내부 구성원간의 갑질·성비위행위 신고센터 운영(시민청렴옴부즈만, 외부인사 참여형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국가인권위원회 합동조사 및 신고자보호, 조사의뢰 등 제반규정 마련)
- ▶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직급**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직급은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렴준법감시기구의 장의 직급도 소속 직원의 규모, 예산규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사규로 적정하게 부여)

- 기존 공공감사기구와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렴준법 감시기구 운영방안 마련



- **(중·장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 대해서도 감사기구와 별도로 「청렴준법감시기구」 제도 도입방안 검토

⇒ 가칭 「청렴준법감시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붙임-1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현황(예시 : 산자부)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1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1.30.]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3. 21.]
2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한국남동발전(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
6	한국남부발전(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
7	한국동서발전(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
8	한국서부발전(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
9	한국중부발전(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
10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11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법]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40조)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주)강원랜드 [폐광지원법]	×	×
13	(주)한국가스기술 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3조]	×	×
14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한국전력기술(주) [상법 제317조]	×	×
16	한전KDN(주) [상법 제317조]	×	×
17	한전KPS(주) [상법 제317조]	×	×
18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37조]	제51조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벌칙) 제5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제28조]	×	×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21	한국광해관리 공단 [광산피해방지법 제31조]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11조]	제16조(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3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 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4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	상동	상동
25	한국산업단지 공단 [산업집적법 제45조의9]	×	×
26	한국석유관리원 [석유사업법 제25조의2]	제38조의3(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45조의2(벌칙)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27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벌칙) 제6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28	한국원자력환경 공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	×	×
29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에너지법 제13조]	×	×
30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안전공사의 임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31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사업법 제35조]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등) ① 한국 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 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2조(벌칙) 제42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32	전략물자관리원 [대외무역법 제29조]	제27조(비밀 준수 의무) 이 법에 따른 전략 물자의 수출입통제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직원과 제29조 제5항 제1호의 판정 업무와 관련 된 자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상 비밀을 그 업체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벌칙) 제27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지능형로봇법 제41조]	×	×
34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	제46조(비밀유지)제4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35	(재)한국에너지재단 [민법 제32조]	×	×
36	한국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의2]	제46조(비밀유지)제45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 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37	(재)한국에너지 정보문화재단 [민법 제32조]	×	×
38	한전원자력연료 (주) [상법 제317조]	×	×
39	한전엠씨에스(주)	×	×
		(신규지정)	(신규지정)
40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고등교육법 제4조, 제30조]	×	×
★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 이사 제43조의3(회계감사인 선임 등) ④ 회계 감사인과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직원 등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벌칙) 제43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2

개발업무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및 벌칙 현황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1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1.30.]	제19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3. 21.]
2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법]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40조)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법]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한국산업단지 공단 [산업집적법 제45조의9]	×	×
8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지능형로봇법 제41조]	×	×
9	인천국제공항 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10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법 제166조]	제17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6조(그 밖의 벌칙) ①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제179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9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법]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한국토지주택 공사 [한국토지주택 공사법]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법 제36조의2]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사의 임직원 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벌칙) ④ 제36조의16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부산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인천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상동	상동
19	여수광양항만 공사 [항만공사법]	상동	상동

No.	기관명	비밀유지의무 규정	벌칙 규정
20	울산항만공사 [항만공사법]	상동	상동
21	한국어촌어항 공단 [어촌·어항법 제57조]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벌칙)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 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법]	제50조의3(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벌칙) ② 제50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법]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 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공사법]	제17조의2(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및 직원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벌칙)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기관명	근거 조례	비밀유지	벌칙
1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2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3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9조	×
4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조례	제6조	×
5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	×
6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19조	×
7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
8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
10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
11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18조	×
12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7조	×
13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
14	울산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15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21조	×
16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17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4조	×
18	충북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조례	×	×
19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
20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21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22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6조	×
23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6조	×
2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7조	×
25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26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No.	기관명	근거 조례	비밀유지	벌칙
27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28	수원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29	부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30	용인도시공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31	안산도시공사	안산시 안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32	안양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33	평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34	시흥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35	화성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36	광명도시공사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	제18조	×
37	군포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38	구리도시공사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39	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40	하남도시공사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41	의왕도시공사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42	과천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43	춘천도시공사	춘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44	함안지방공사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45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4조	×
46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47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	×
48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
49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
50	양평공사	양평군 양평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51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	×
52	파주도시관광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53	당진항만관광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54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No.	기관명	근거 조례	비밀유지	벌칙
55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
56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운영 조례	제15조	×
57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8조	×
58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	×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 상 : 공사 임원 비위행위 : 직무 관련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사실 또는 혐의 조 치 : 검·경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감사원에 감사의뢰	×	×

【(예시) 조례에서의 벌칙규정 명시】

▶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7조(벌칙) 제7조(벌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4.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

붙임-3

「토지보상법」 제4조의 개별 법률에 규정한 개발(공익)사업 현황

No.	개별 법률에 규정한 공익사업	소관부처
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 및 특구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국토교통부
3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국토교통부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
8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국토교통부
9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1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국방부
1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국토교통부
15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방부
1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환경부
1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1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환경부
19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해양수산부 외 1
20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환경부
23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국토교통부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국토교통부

No.	개별 법률에 규정한 공익사업	소관부처
2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국토교통부
2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국토교통부
27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2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29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해양수산부
3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국토교통부
3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산림청
3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기획재정부
3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산림청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
3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국토교통부
37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38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국토교통부
3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	산림청
40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해양수산부
41	「행복도시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국토교통부
4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	해양수산부
43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해양수산부
4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국토교통부
4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환경부
47	「온천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행정안전부
4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국토교통부
4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국토교통부

No.	개별 법률에 규정한 공익사업	소관부처
50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환경부
51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행정안전부 외 1
53	「주택법」에 따른 공공사업주체의 국민주택 건설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국토교통부
5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행정안전부
55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국방부
5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5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5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국토교통부
59	「지역특구법」에 따른 특화사업	중소벤처기업부
60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국토교통부
6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부
6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6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국토교통부
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환경부
6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6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석유의 탐사·개발·비축 및 수송사업	산업통상자원부
67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5호의2·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68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업	환경부
69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국토교통부
70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업	해양수산부
71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해양수산부
72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해양수산부
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국토교통부
74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해양수산부

붙임-4

개별 법률상 '비밀유지' 관련 근거규정 명시 현황

No.	법률명	조문명
1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비밀준수 의무
2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비밀준수 의무
3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8조 비밀준수 의무
4	가사소송법	제71조 비밀누설죄
5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	제26조 비밀엄수
9	개인정보보호법	제60조 비밀유지 등
10	건설기술진흥법	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11	건축물관리법	제47조 비밀유지
12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0조 비밀엄수의 의무
1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에 관한 법률	제19조 비밀엄수
1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밀유지 의무
1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16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17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8	공인노무사 법	제14조 비밀엄수
19	공인회계사 법	제20조 비밀엄수
		제40조의16 비밀엄수
20	공직선거법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2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비밀엄수
22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비밀엄수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2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25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제264조의8 비밀유지의무
26	관세사법	제14조 비밀엄수 의무
27	광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28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2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비밀유지의 의무
30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31	교통안전법	제58조 비밀유지 등
32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비밀유지의 의무
3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8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34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35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
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0조 비밀유지의 의무
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5 비밀엄수의 의무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1조 비밀침해
3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비밀의 엄수
4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3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41	국립공원공단법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4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비밀엄수의무
4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비밀유지 의무
4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45	국립항공박물관법	제20조 비밀엄수의무
46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엄수의무
47	국립해양박물관법	제21조 비밀엄수의무
48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밀엄수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49	국민연금법	제124조 비밀유지
50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47조 평의 등의 비밀
		제58조 배심원 등에 의한 비밀누설죄
51	국민투표법	제107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52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
5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5조 비밀엄수
54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5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5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57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57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5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58	국회미래연구원법	제26조 비밀유지의 의무
5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
60	군무원인사법	제17조 비밀엄수 의무
61	군사법원법	제15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제15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6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63	군용전기통신법	제17조 비밀침해죄
6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44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65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 비밀유지 등
6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비밀유지
6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금융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6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6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70	기술사법	제9조 비밀엄수 의무
7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72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37조 비밀유지 등
73	노동위원회법	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7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7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0조 비밀엄수의 의무
76	대외무역법	제27조 비밀준수 의무
7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비밀준수의무
7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 비밀유지의무
7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8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비밀의 엄수
8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 비밀엄수의 의무
8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밀유지 의무
83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비밀누설의 금지
84	디자인보호법	제225조 비밀누설죄 등
85	모자보건법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86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87	민사소송법	제164조의7 비밀누설죄
88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89	발명진흥법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9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91	방위사업법	제50조 비밀의 엄수
92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93	법원조직법	제81조의11 비밀준수 의무 등

No.	법률명	조문명
94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제77조의2 비밀준수
		제89조의8 비밀누설의 금지
95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 비밀보장
96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8조 비밀엄수의 의무
97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2조 비밀유지의무
9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9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비밀유지 등
1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제64조 신고자의 비밀보장
101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엄수의 의무
10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6조 비밀엄수의무
10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9조 비밀유지의무
104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비밀준수 의무
105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비밀누설의 금지
10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 비밀유지
10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의무
108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6조 비밀유지
109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110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유지
111	상법	제92조의3 대리상의 영업 비밀준수의무
		제382조의4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16 비밀유지의 의무
113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밀유지의무
1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11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밀엄수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116	석면피해구제법	제46조 비밀의 유지
1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의3 비밀유지
118	선원법	제128조 비밀유지 의무 등
11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1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비밀엄수의 의무
1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48조 비밀준수
122	세무사법	제11조 비밀엄수
123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비밀준수 의무
12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비밀유지의무
12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76조 비밀누설의 금지
12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6 비밀준수 의무
127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2조 비밀유지의 의무
12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비밀유지의 의무
129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4조 비밀누설죄 등
1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69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131	실용신안법	제46조 비밀누설죄 등
132	아동복지법	제65조 비밀유지 등의 의무
13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비밀준수의 의무
		제54조 비밀준수
1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135	암관리법	제44조 비밀유지 의무
136	약사법	제68조의9 비밀유지의무
		제87조 비밀누설 금지
1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13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6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139	어촌·어항법	제58조의9 비밀유지의 의무
14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2조 비밀누설의 금지
141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비밀 유지
142	예금자보호법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0조의2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유지의 의무
143	외국법자문사법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144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145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5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146	우주개발진흥법	제25조 비밀엄수의 의무
147	우편법	제3조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148	우편환법	제19조 비밀의 보장
149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4조 비밀유지의 의무
1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0조 비밀준수 의무
15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밀의 유지
15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비밀유지
153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비밀준수의무
154	입양특례법	제37조 비밀유지의 의무
15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8조 비밀유지 의무
15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의 유지
157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비밀누설 등의 금지
158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44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159	재외동포재단법	제24조 비밀엄수 의무
16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7조 비밀유지
161	저작권법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162	전기안전관리법	제37조 비밀유지의 의무
163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비밀 유지
16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영업비밀 보호
		제37조의2 비밀유지
1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비밀보호
167	정당법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16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밀유지
169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
170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 비밀유지의무
1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제66조 비밀유지 등
172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8조 비밀엄수
173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비밀누설의 금지
17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유지의 의무
175	정치자금법	제63조 비밀엄수의 의무
17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177	제품안전기본법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178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179	주민등록법	제36조의3 비밀유지 등
18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밀엄수
18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8조 비밀유지의무
182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18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비밀유지
184	지방공무원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185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비밀유지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186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 비밀엄수
187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188	지식재산기본법	제39조 비밀누설의 금지
18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비밀유지의무
190	직업안정법	제42조 비밀보장 의무
19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41조 비밀준수 의무
19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비밀엄수의 의무
19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7조 비밀누설의 금지
19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유지
195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비밀준수의무
196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6조 비밀유지
197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비밀엄수
198	탄소소재융합기술개발및기반조성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비밀엄수
199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200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등
20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20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20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204	특허법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205	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	제27조 비밀준수 의무
20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207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20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 비밀의 유지
209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0조 비밀유지
210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0조 비밀유지의 의무
211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2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213	한국국방연구원법	제12조 비밀엄수
21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2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6조 비밀엄수 의무
216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6조 비밀 엄수 의무
217	한국도로공사법	제9조 비밀누설 금지 등
21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8조 비밀 유지
2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22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1조 비밀유지의 의무
2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2조 비밀엄수의 의무
22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
22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22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비밀엄수의 의무
22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7조 비밀유지의 의무
226	한국연구재단법	제18조 비밀엄수의 의무
2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1조 비밀엄수의무
228	한국은행법	제42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229	한국재정정보원법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2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9조 비밀엄수 의무
231	한국철도공사법	제8조 비밀누설·도용의 금지
23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6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23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4조 비밀엄수의 의무

No.	법률명	조문명
23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8조 비밀유지의 의무
235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236	한국환경공단법	제12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2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29조 비밀엄수의 의무
238	한·아프리카재단법	제21조 비밀유지의 의무
23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밀엄수의 의무
240	해사안전법	제100조 비밀유지
24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6조 비밀준수의무
24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비밀엄수
24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15조 비밀유지의무
244	행정사법	제23조 비밀엄수
245	행정절차법	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246	형법	제127조 공무원 비밀의 누설
247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제111조 공무원 비밀과 압수
		제112조 업무상 비밀과 압수
24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의5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249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25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밀보호
25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7 비밀준수의 의무
252	환경영향평가법	제69조 비밀유지의 의무
25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11 비밀유지의 의무
254	환자안전법	제17조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 등
25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비밀누설 금지
256	희귀질환관리법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붙임-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전·후 근거규정 비교

개정 전	개정 후('21.7.2. 시행)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좌동
제2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 형법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좌동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제26조(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이하 “미공개정보”라 한다)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 ②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 ③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 제1항 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 공직자윤리법 」 제9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의3(준법감시관) ① 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붙임-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전·후 근거규정 비교 - 계속

개정 전('21.4.1. 개정)	개정 후('21.7.2. 시행)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의4(부패방지교육) 공사는 소속 임직원의 제26조 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좌동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28조(벌칙) ① 제2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또는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	제30조(몰수·추징) 제28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토론-1

**퇴직공직자에 대한 혜택의 감소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우 향상의 필요성**

토론자 : 김 기 원(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혜택의 감소에 상응하는 실질적 처우 향상의 필요성

김기원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 법제이사)

1.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인정 제도를 둘러싼 쟁점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인정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보입니다. 첫째, 일반 수험생과 비교할 때 전관 공무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관점입니다. 둘째, ‘특혜’의 측면과는 별개로 퇴직한 공직경력자가 전문자격사가 될 경우, 과거의 경력과 인맥,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현직 공무원들과 유착되어 불공정한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공직경력자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응시할 경우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혜택이 필요함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는 유능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해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킨다¹⁾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는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 유능한 인재 채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에 맞는 적합한 수단이 ‘자격시험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유능한 인재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목적은 ‘공무원의 보수·연금 인상’ 등의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격시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공직경력자는 국가전문자격자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경험 등의 정신적 능력을

1) 김남영,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4, 1면 참조.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

② 공직경력자의 지식과 경험은 연령, 수험적합성 등의 문제로 인해 '자격시험을 푸는 능력'의 방식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는 없으므로,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경험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다.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인정제도는 '특혜'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시험을 면제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과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적절한 처우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관 카르텔'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인 대안은 '카르텔이 생길 수 있으니, 공직 경력자의 자격시험 혜택을 폐지하자'가 아니라 '인맥, 영향력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자'가 되어야 함.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가장 많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유능한 인재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장기간 종사하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유능하고 공정한 퇴직 공무원이 자격시험 응시에서 우대를 받아 전문자격사가 된다.

③ 해당 퇴직 공무원은 그 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④ 전관 카르텔 등의 부당한 요소 없이 사회가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대안은, 공직경력자가 자격시험을 응시할 경우 적절히 우대하되, 전문자격자가 된 후에도 '카르텔, 영향력'등의 부당한 개입이 없다고 보여지는 구조적 외관이 필요합니다.

4. 이상적인 대안을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쫓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은 있으나, 이는 ‘공무원의 처우’를 고려하지 않아 균형을 잃는 문제가 있음.

‘공직경력자가 전문자격사가 되도록 우대하고, 이후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구분하자는 것은 현실에서는 양립시키기 어렵고 상반되는 두 가지 목표다. 결국 이상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공직경력자를 우대하지 말거나 우대의 정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이 발제에서 드러나는 전제로 보입니다. 위의 이상적인 대안이 현실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는 일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은 희생만 해야한다는 식의 주장 역시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은 공공이 보유한 자원의 사용을 결정하거나, 때로는 분쟁이나 정책 등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위치에서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취하고자하는 유인에 흔들릴 가능성이 큼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패감시를 위한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공직의 경우 ‘현직에서의 보수는 다소 낮으나, 장기간 근속하고 불미스러운 일 없이 명예롭게 퇴직할 경우 상당한 연금을 보장하는’식의 유인책이 강화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공직이 ‘장기근속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처우 수준, 직업적 안정성, 공직에 대한 국민 전반의 존중, 상당한 연금액수’ 등의 유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저임금을 비롯한 민간 급여수준의 전반적 상승, 공직자를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문화로의 변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연금액의 저하’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퇴직시까지 근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직경력자에게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혜이며 부당하다’는 주장이 정교하고 세심하게 체계와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으로서 호소력을 얻으려면, 사심 없이 공직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보상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발제의 취지에 공감하나, 공무원의 실질적 처우향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야 함.

과거 판·검사의 전관예우가 사회문제가 되어, 전관예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문화적인 노력이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일본처럼 전직 판·검사가 변호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기는 문화 및 처음부터 전관예우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법제도(디스커버리, 배심제도 등)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급적 전직 공무원이 퇴직 후 전문자격사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문화적인 유도가 필요하고, 전관예우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발제의 내용과 같이 국가전문자격제도의 공직경력 인정 특혜소지 차단,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무시험 특혜 제도 폐지, 공직퇴임 이후 수입 제한 등의 행위규제 장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역시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나 ‘공직경력자 특혜’라는 비판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직의 보상과 기회를 감소시키는 일방적 방향성의 반대편에는, ‘공무원이 갖춘 능력과 성실한 업무처리가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균형을 맞추어져야, 사회구성원간의 역할, 기여와 분배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구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에게 성직자와 같은 중립적 심판자와 감시자로서의 공적 의무만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에

게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혜택만을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라고 일도양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에 그에 어울리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해, 유능한 인재가 장기간 공직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토론-2

토론자 : 장 세 정(중앙일보 논설위원)

토론-3

『전관특혜·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토론자 : 성 승 제(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관특혜·카르텔 차단을 위한 취업·행위제한 강화』

11월 4일 「공직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특혜 관행 개선」 토론회 및 같은 세미나 2세션 윤효석 제도개선전문위원님 발제 주제에 대한 성승제 생각을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분야에서 견해가 갈리는 표현이나 주장을 사용하거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주의자적 입장에서 소개하려 합니다.

○ 비슷한 문제에 대한 다른 표현의 사용례 : “작은 나라의 큰 문제 - 지역감정” by George Friedman. 약간은 뜬금없는 인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와 다릅니다. 그 국가내 구분되는 지역이 몇 개 거론되지 않습니다. 반면 큰 나라(소위 대국, 대국주의를 갖는 국가로는 미국/중국/러시아/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은 특정한 지역 출신들이 국가 최고지도자를 support하는 직을 많이 점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주요 포스트를 임기 교체시마다, 해당 그룹들이 차지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로 이슈 리포팅되는 일이 적은 편입니다.)

○ 한국의 문제 -

(1) 구 카르텔의 해체 : 멀리보면, 6·25 라는 크나큰 비극이 몰고 온 행복한 반작용.. 이라는 표현이 용서가 된다면, 그 때 계급사회가 분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들 멀지 않은 곳에서 접하게 되었을 수 있었을 비상한 사태인, 전쟁 상황에서의 죽음이나 굶주림 앞에서 계급이나 신분은 작용을 멈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신 카르텔

① 대한민국은 전쟁이후 70여년간 중단없는 성장을 이어왔습니다(통념과 달리

한국의 경제성장 및 수출은 이미 1950년대 시작한 것이 각종 통계와 기록으로 입증된다고 합니다 - 예컨대 참조: 김두얼 경제학교수(명지대) 일련의 저작들).

②

- 구 일본제국의 피식민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공급독점(소수에 의한 효율적 지배를 위한)이 사회의 출발부터 이미 형성되었습니다.

- 이 토대 위에 급속한 또는 효율을 핑계로 한 성장의 명분으로써, 특정한 직업들에게 직분을 넘어서는 대가가 지급되는 관행들이 자랍니다. 교수, 교사, 의사, 박사, 로스쿨 등(이 중에서, 적절? 또는 과도한 공급을 실행에 옮긴 박사는 가치가 중하층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왜 공급이 중요한지를 박사학위가 웅변합니다)

- 정통 민주 국가들(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미국은 의사는 제외))은 이러한 직업군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사회에서 중하층입니다. 급속한 추격성장을 국시로 한 나라들은 다른 선진국을 모방하고 카피하기 위한 직업들을 일종의 성역으로 취급합니다(대표적으로 19세기 후진국 독일에서 형성된 교수 권력).

- 이 혜택이 기득권이 되고 공고화됩니다.

- 새로이 생성되고 구축되는 신 카르텔의 핵심은 고위공직자가 가장 강력합니다. 중앙집권적 형태의 계급구조하에서 정점에 오른 신분을 취득하였습니다. 위에 열거한 신분들은 매우 분산적이고 개별적인 반면에 고위공직자의 경우 정점이라는 위치까지 더합니다.

○ 해결의 모색

(1) 솔직한 표현을 한다면, 해결은 난망이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성된 카르텔은 구 일본 제국의 자이바츠(財閥)처럼 외부의 충격이 아니면 해체되지 않습니다. 이미 사회를 장악하였기 때문입니다.

(2) 구 일본제국의 자이바츠(財閥)을 해체하기 위한 미국 관리의 표현을 빌어 보겠습니다(1946년 초 일본 도쿄에서 입국한 직후 인터뷰한 신문 기사를 읽은 것

이라서 full name은 모릅니다). Edward라고 적힌 미국측의 일본 자이바츠 해체의 전권을 가진 미국 관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침략행위는, 일본 내에서 시장에서 독과점 이윤을 획득하던 자이바츠들이 독과점으로 인하여 일본 내의 소비력이 감소하게 되자 이윤을 역시 줄어들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사회를 움직여서 해외 이윤 획득으로 그 감소한 이윤을 보충하고 또 뛰어넘기 위하여, 시작한 것이다’(그러므로 자이바츠(財閥)를 해체하여야 한다)

(3)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

한국내에 분야에 따라 사회적 독과점을 해결하고 큰 성과를 얻는 분야로 전환하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몇 있습니다.

① 한류 -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슈퍼스타가 출연한 영화일지라도 극장 상영관 사장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극장에 필름이 걸릴 수도 없었습니다. 슈퍼스타나 영화배급사의 중요 업무가 상영관 사장의 호감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말부터 ADSL 등 초고속 인터넷망이 한국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한국의 밀집주거 상황과 맞물려, 초고속인터넷망 전국 보급이 정부 정책의지로서 보편화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누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지를 극장 상영관 사장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로 시장이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제방한 오늘날 한류의 뿌리는 25년전 무렵 시작된, 문화 플랫폼이 초고속인터넷을 타고 활짝 열린 데에 있습니다.

② 언론 - 같은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변화 또 있습니다. 가령 상대적으로 전세계 종이 신문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나라 일본을 보면, 아직도 전국민이 몇 명의 기자가 쓰는 기사를 보고 교육을 받는 듯 합니다. 반면 부작용도 크지만, 온라인 상에서 한국에서 기자는 ‘기레기’라는 멸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 병목을 관리하는 언론권력이 활자화하면, 국민들은 교육받아야 하는 일본과 다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독과점 현상은 줄었습니다. (다만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 ‘정보의 섬’ 속에 갇힌 대중의 비율이 높아진 부작용은 증가했습니다..)

③ 분쟁의 조장과 권장이 필요하다 - 한국의 법학은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법학은 경제성장을 돕는 일을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사회적 형태를 건

전하게 가져가는 칼의 역할을 합니다. 철퇴를 내리치기도 하고 자르고 제재하고 처벌하는 것을 연구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가령 주식회사를 자신과 또는 자신만의 가족을 위해 제도를 유용한 자는, 아마도 그 폐해를 다 환산하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의 철저한 추궁과 발본색원은 진정한 피해감소와 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해주므로 친자본주의적인 조치입니다. 시장에서의 가격결정자 price setter 가 사라지게 해 줍니다. 시장의 참가자간 상호간 대등성을 확보하여 시장을 복원합니다.

분쟁의 발생을 조장하고 협력해주면 사회의 부조리는 감소합니다.

a. 가슴기 살균제 피해 ((신고 사망자 1,740명 부상자 5,902명 피해자 사건(집계에 따라 다름. 가령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미신고 사례포함하면 1994~2011 사이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 집계)),

b.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2015.11 ~ 2016. 1 사이 화재사고 6회, 2016.5.18. BMW 측 연료호스 결함 인정하였지만 화재와의 연관성 부인 및 리콜, 2018년 이후 또 BMW 520d 화재 빈발) 등이 유아무야 잊혀진 사건들이 잊혀지고 사라지도록 방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나 맥도날드 등 체인점에서 물만 바닥에 흘러도 주의 표지판을 왜 즉시 비치하는 업무 매뉴얼을 갖게 되었는가? 미국 현지에서의 철저한 책임추궁으로 인한 천문학적 손해배상책임 추궁을 당한 덕입니다.

c. 디젤게이트 사건 : 폭스바겐Volkswagen(국민의 차(= peoples' car(wagon)) 등 유럽자동차 회사들이 유해한 질소산화물 배출이 가능한 자기들 생산한 디젤자동차가 배출가스를 대폭 감소시켜 해롭지 않다고 주장한, 사기적 행위들). 폭스바겐과 그 자회사인 아우디, 포르쉐, 스토다, 세아트, 그리고 스텔란티스 산하의 피아트, 크라이슬러, 오펠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르노-닛산-미쓰비시 연합 등. 이들 자동차 메이커들은 한국에서만 별 문제없이 책임 부담없이 사태 확산을 피했습니다.

때로는 미국에서 발전한 법역처럼 책임제한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 가령 미국 주택 소매시장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는 그 집을 포기

하면 더 이상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세일개스 개발과정에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파산하면 그 세일 개스 개발 플랜트 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채무도 없습니다.
- 소비자금융에 대하여 변동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고정금리입니다.

(4)

① 분쟁의 큰 장을 세워 정의를 구현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법 영역이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전세계 경쟁당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글자로 적기에는 저어되어서 현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①-1. 가령 디젤게이트 등 위 열거한 사례의 경우, 전문적인 식견과 업무를 담당한 전직 공무원 관련 업무 담당 출신자는 혁신적인 자료와 의혹을 손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2. 음성적인 업무 담당을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①-3. 구태여 어둠 속으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② 보충적으로는, 전관예우를 금지하지 않는 것도 견해도 도출될 수 있습니다. 햇빛의 영역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③ 이유는 규제는 규제를 불러오고, 해당하는 규제들 각각의 건들은 풍선효과를 낳습니다. 규제를 도망치려 탈법행위(뜻- 설명할 것)를 도모합니다. 탈법행위를 쫓아가서 또 다른 규제를 설치하면 풍선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토론-4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전관 특혜 관행 개선 토론 자료

토론자 : 서 영 민((유)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전관 특혜 관행 개선 토론 자료

토론자 : (유)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서영민

- 공직사회에 아직 전관특혜 관행이 여전, 특히 소위 '힘센 정부기관 퇴직자'들의 전관 특혜가 문제됨, 과거에는 전관예우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전관특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함
- ✓ 시장경제 왜곡 / 공정문화의 결핍들 ----- 젊은 세대에게 좌절감과 분노
- ✓ 퇴직자들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 활용'이라고 주장
- 최근에 '국회', '공수처 검사', '국세청', '검/경', '금융위(금감원)', '식약처' '고용노동부' '기재부', '산업부' 등 소위 힘센 기관 내지 규제기관 출신들이 대거 대형 로펌, 관련 기업 등에 취업하여 각종 공직 업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 ✓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 ✓ 국회 보좌진 / 선거운동 관여자 / 언론인 등 사기업 취업
- 발표자께서는,
- ✓ 문제점으로 1, 업무 연관성이 높은 단체 등에 공직자 재취업 여전하고, 2, 취업 심사대상자의 임의 취업을 용인하는 심사관행 3. 퇴직자의 '입장, 태도의견 바꾸기'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 ✓ 개선책으로 1. 공공기관 2급 이상으로 취업심사 직원 대상 범위 확대, 2. 퇴직 공직자 재취업시 대상기관 범위 확대 3. 전 소속기관 대상으로 하는 퇴직공직자 행위 제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
- ✓ 위 개선책에 충분히 공감함

- 추가하여 퇴직공직자 내지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에 취업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원인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고 싶음
- ✓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한 취업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할 필요
 - 고위직/하위직 구분없이 전 공직자 대상
 - 현재에도 위장취업, 취업제한 기간 후 취업 약속, 일감 몰아 주기 방법으로 취업제한자에 대한 사전 관리, 미취업 상태에서 브로커로 활동(감시와 견제가 가능하지 않음)
 - 100세 시대 so 50대 내지 60대에 퇴직 한다 하더라도 남은 40년간 생계활동을 위한 직업이 필요, 현직자도 퇴직 후 전관과 동일한 활동을 하여야 하므로 퇴직자들의 활동을 무시하기 어려움
 -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하여 능력을 인정받고 합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헌법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 ✓ 정부기관에 부여된 과도한 규제와 권한 완화
 -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기관 규제와 권한이 존재하고 강할수록 민간 side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관을 필요, 규제가 강할 수록 이권카르텔 강화
 - 규제/권한이 강할수록 공무원은 보신주의로 인해 민간과의 접촉을 꺼리고 그럴수록 공무원이 믿고 만날 수 있는 전관을 더욱 필요로 함
 - 심지어 '공공기관'과 함께 규제를 만드는 것에 관여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한 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관을 영입하는 경우도 있음
 - 공공기관은 퇴직 후 전관특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기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음
 - 기관내 권한 조정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 전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전관)
- ✓ 전관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투명한 정보공개 시스템 필요
 - 퇴직공직자의 재직시 이력, 업무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DB 구축 및 관리 기관을 명확히 할 필요 (권익위 VS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대상자의 취업대상 기관에서의 업무 내용, 연봉, 출입기관, 접촉 공무원 등 활동내역과 보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
- 공공기관도 모든 퇴직공무원의 출입, 접촉자, 접촉 시간, 면담내용 등을 기록/보관을 의무화 할 필요(ex 검찰에서 시행중인 변호인 출입등록제)
- ✓ 행위제한 위반 재직/퇴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재직 기관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공직자윤리법 18조의 4 제 1항 및 제 2항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신고” 규정
 - “청탁 또는 알선” 뿐만 아니라 “설명” “소개” “자료제출” 등도 규정
 - 신고 누락, 해태 등에 대하여 재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하여도 책임 강화
 - 소위 ‘양벌규정 시스템 도입(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시스템 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유도
-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제3호 및 제22조 “부정한 청탁, 알선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청탁/알선을 신고하지 아니한 재직 공무원 징계 의결 가능”
 - 부정한 청탁/알선을 신고하지 아니한 재직공무원……처벌 규정 신설
 - 29조 3호 및 제22조 :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양벌 규정 도입
 - …기관 의무해태 인정 : 임기내 해임 및 해임후라도 과태료 부가
- 공직자윤리법 내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퇴직공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도입
- 결론
 - ✓ 취업은 허용하되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
 - ✓ 재직자/퇴직자에 대한 견제, 감시를 넘어서 ‘재직기관 및 기관장 / 퇴직자 취업 기관 및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토론-5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 준법감시제 도입

토론자 : 설 광 호(준법감시협의회 회장)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 준법감시제 도입

토론자 설 광 호

감사관(또는 감사담당관) 임면의 적절성 확보 방안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임면시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참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에 따른 보고)

① 금융회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임면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 임면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보고하게 하여 교차 임용이 없는지, 개방형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임면되는지 임면의 적절성에 대해 견제,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봄

금융회사의 임원(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전무, 상무 등 업무집행책임자 포함)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의거하여 해당 금융회사에서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참고]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내 임원의 정의 중 일부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직 내부의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 강화 관련

먼저, 전·현직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대상 범위 확대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었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기관에 둔 각종 위원회(설계·용역 등)에 위촉되거나 위촉되었던 민간위원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이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자신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정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데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자본시장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당연한 조항 같음

[참고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참고]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참고2]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내부자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도 준내부자라 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이 됨. 또한 내부자나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1차 정보수령자)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자가 됨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위반시 벌칙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1차 정보수령자가 아닌 2, 3차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됨(참고 :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2, 3차 정보수령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부존재).

또한, 이러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이용하는지는 거래소, 금감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등에서 수시로 이상 거래의 모니터링이나 검사, 수사가 진 행되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있음

자본시장에서 수시로 검사나 수사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의 위반자에 대한 수사의뢰 의무화는 자연스러운 것 같음. 다만,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수사의뢰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음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했다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처벌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택지 개발, 지구 지정 구역 등에서 부동산 거래로 이득을 취한 경우 등)를 했다면 거래로 인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필요함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를 단기매매차익이라 규정하고 그 수익을 반환받고 있음

[참고]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개방형 청렴·준법전담기구(“청렴준법감시관”이라 함)에 관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 위원회 보고도 요구하고 있으나, 그와 별개로 자격, 임기, 신분보장, 임무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금융회사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있지만, 내부통제가 정착되는 이유는 수시로 감독당국, 거래소 등의 상시 모니터링, 정기검사를 비롯하여 수시로 검사 대상 등 이 될 수 있고, 임직원들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임직원들도 징계조치를 받 지만 금융회사도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임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면 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도 양벌규정에 의해 같이 처벌 받는 경우가 있음.

금융회사가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대주주 변경승인이 안됨.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만 받더라도 5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감봉 조치만 받더라도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됨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법규를 준 수해

야할 유인이 일반 회사에 비해서는 더 크다고 봄. 그래서 준법감시인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음

준법감시인 제도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직, 업무의 독립적인 위치 및 점검 체계 구축, 점검 후 각 종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최고경영진의 인식도 병행되어야 함.

증권회사의 경우 각 종 거래 점검 시스템, 준법감시인 사전 결재, Compliance평가 와 같은 시스템적인 요소 외에도, 준법감시인이 인사위원회 위원, 내부통제위원회 위원,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감사위원회 보고나 이사회 보 고 등을 수행함으로써 준법감시 제도가 정착되게 하고 있음.

참고로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주식(주식관련 사채 포함)을 거래하려면 「자본시장법」 상 소속된 회사를 통해 하나의 계좌로 거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그래서 증권회사의 임직원들은 주식거래에 대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준법감시인은 이를 점검함(어떤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주식거래에 대한 위규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위규 행위 발견시 경고조치를 하는데, 만약 위규 행위가 중대한 경우 감사 실시로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음).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과 비교하면 형량이 너무 낮다고 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가 있는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에서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회사에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처럼 점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아닌 친·인척 등의 명의로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제나 금융실명제가 정착될 필요도 있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나 명의수탁자는 형사처벌이 됨(「부동산실명법」 제7조)

대법원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제가 일정 부분 정착되게 하고 있음

문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기 지급된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제의 완전한 정착이 안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례가 변경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음

입찰·계약, 채용, 개발계획 등 미공개정보 유출이나 이용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관계 법령이 확실히 적용된다는 인식이 되어야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미래세대의 근로 의욕도 고취되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음

토론-6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 유 한 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공직내부 개방성 제고 및 청렴·준법감시제 도입에 대한 토론문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발표문은 ① 개방형 감사 책임자의 내부직원 위주 임용형태 만연 ② 조직내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 약화 ③ 부패예방·내부통제를 위한 개방형 준법전담기구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① 개방형 감사관 직위 제도의 도입 실효성 제고 ② 조직내부 각종 비위행위 관련 내부통제 장치 강화 ③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개방형 청렴·준법전담기구 도입을 제시하였다. 본 토론자는 문제의식과 개선방안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면서 ‘개방형 감사관 직위 제도의 도입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2010년 3월에 제정되었다. 법을 제정하면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법 제정 이유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성이 낮은 경우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였고 “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제, 신분보장 등과 함께 임용자격과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자체감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이유는 신분보장,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개방형 감사관 직위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내부직원 지원 제한 ② 특정부서 또는 특정기관 출신이 2회 이상 연이어 임용될 수 없도록 근거조항 신설 ③ 부처간 또는 기관간의 상호 교차 임용을 금지를 제시했다. 본 토론자는 이에 더하여 감사원 출신이 다수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이 받은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감사원 직원 총 57명이 사직서를 내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감사관직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기를 마치지 않은 18명을 제외하고, 39명 전원이 개방형 감사관직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감사원에 복귀”²⁾했고, “2년 단위로 채용하는 경찰청 개방형 감사관직은 개방형 감사기구장 제도(공공감사법)가 시행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모두 감사원 현직이 차지”³⁾했다. 그리고 토론문에서는 2021년 6월 기준 17개 특별·광역시도 개방형 감사기구의 장 중 6명이 감사원 출신이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의 경우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나 3회 연속 감사원 과장(현직)이 연이어 임용되고 있어, 외부로부터 감사원의 파견 직위로 오해할 소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서울시 감사위원장에 감사원 현직자가 연속하여 임용됨으로써 감사원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중요 감사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해충돌 상황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감사원 출신이 다수의 기관에 광범위하게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의 취지인 독립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방형 감사관직을 마친 전원이 감사원으로 복귀하는 상황은 “개방형 감사관직을 내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감사원 간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⁴⁾된다. 해당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사원 출신을 개방형 감사관직으로 유치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바람막이로 활용하고 감사원은 인사문제를 해소하면서 기관 출신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검사하고 직무를 감찰한다.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15조는 개방형 감사관의 결격사유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감사원-개방형 감사관 '회전문' 인사에…권익위 "이해충돌 소지"」 CBS노컷뉴스, 2022.2.4.

3) 「경찰청 개방형 감사관에 또 감사원 현직…」바람막이 언제까지」 연합뉴스, 2022.1.31.

4) 각주 1) 기사

을 들고 있다. 감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법인이나 단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원 출신에 대해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출신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과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 결격사유에 감사원 출신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의 이득형 행정감시위원장은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모든 피감기관과 이해충돌 관계라서 현직이 피감기관 감사기구장이 되는 것은 공공감사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제정 취지에 위반한다"며 "임기를 마친 뒤 아무런 제재 없이 감사원으로 그대로 복귀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⁵⁾

개방형 감사관이 임기를 마친 후 감사원에 그대로 복귀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후 임기가 만료된 공무원들을 원 소속기관에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에 따른 것이다. 이해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개방형 감사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개방형 감사관이 최소한 감사원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원 소속기관으로는 그대로 복귀할 수 없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각주 1) 기사